

포항펜타시티I 대방 엘리움 A1BL 입주자모집공고문



■ 포항펜타시티I 대방 엘리움 A1BL 입주자모집공고[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지구관리2과-3376호(2021.11.11.) 승인] 내용 중 아래 내용을 정정 공고함.

[변경 전]

개별 추가선택사항 옵션품목 → 스타일러 → 비고

- 미선택 시, 84B타입 파우더룸 약세사리함 설치/ - 미선택 시, 84C타입 파우더룸 가구 FIX 판넬 설치/ -미선택 시, 116타입 알파룸 불박이장 설치/ -미선택 시, 117타입 파우더룸 약세사리함 설치

개별 추가선택사항 옵션품목 → 인테리어 → 거실 → 고급 바닥 마감(광목마루)

[변경 후]

개별 추가선택사항 옵션품목 → 스타일러 → 비고

- 미선택 시, 84B, 117타입 약세사리함 설치/ - 미선택 시, 84C타입 가구 FIX 판넬 설치/ - 미선택 시, 84A, 116타입 불박이장 설치

개별 추가선택사항 옵션품목 → 인테리어 → 거실 → 고급 바닥 마감(광목마루) (해당항목 삭제)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 관련 안내사항

※ 견본주택 운영관련 안내

- 포항펜타시티I 대방 엘리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사이버 모델하우스(<http://elium-pohang.co.kr>)와 견본주택 관람인원을 제한하여 운영할 할 예정입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해 전염병 취약계층인 노약자 및 미성년자는 관람이 불가하오니 관람예약 시 참고 바랍니다.
- 당첨자발표 이후에는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본인에 한하여 청약자격 확인용 서류제출 및 분양계약체결 목적에 한해 견본주택 입장이 가능합니다.

※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견본주택 입장 전/후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 견본주택 입장 시 비접촉 체온계를 통한 체온이 37.5도가 넘을 경우
- 손 소독제, 비접촉 체온계 등 예방절차에 불응하는 경우
- 기타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정부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견본주택 관람, 당첨자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포항펜타시티I 대방 엘리움은 상담전화(1688-9700)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제공으로 청약관련사항에 대한 착오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1644-7445)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1.9.27.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11.12.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포항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하나, 본 아파트에 당첨이 되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라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다만, 재당첨제한기간 중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민영주택에는 본 아파트의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제3호)	10년간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1.12.) 현재 포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포항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 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 장모, 시부모, 조부모, 외조부, 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 모두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 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 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 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단,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불필요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2순위)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기준	-	-	적용	-	적용	-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 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 금융인증서 또는 ③ 네이버인증서 ④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 (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O	O	O	O
APT무순위 / 잔여세대 / 취소후재공급	O	O	X	O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건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항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4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elium-pohang.co.kr)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4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4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멸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57조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의거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3년 동안 전매가 금지됩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의 지역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 2020.0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구 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경제자유구역,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1순위	일반2순위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일 정	11월 24일(수)	11월 25일(목)	11월 26일(금)	12월 02일(목)	12월 14일(화) ~ 12월 17일(금)
방 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장 소	■ 사업주체 건본주택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당사 건본주택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건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9.27.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지구관리2과-3376호(2021.11.11.)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포항펜타시티 A1BL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27층 8개동 총 874세대 중 일반공급 418세대
[특별공급 456세대(일반[기관추천] 57세대, 경제자유구역 87세대, 다자녀가구 87세대, 신혼부부 114세대, 노부모부양 26세대, 생애최초 85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4년 1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m ²)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분양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경제자 유구역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민영 주택	2021000772	01	84.9132B	84B	84.9132	29.2571	114.1703	61.5225	175.6928	43.6209	352	35	35	35	70	10	52	237	115	4
		02	84.7856C	84C	84.7856	30.2012	114.9868	61.4301	176.4169	43.5554	218	22	22	22	44	7	33	150	68	
		03	116.4552	116	116.4552	24.5250	140.9802	84.3758	225.3560	59.8244	146	0	15	15	0	4	0	34	112	
		04	117.4509	117	117.4509	23.5318	140.9827	85.0973	226.0800	60.3359	158	0	15	15	0	5	0	35	123	
	합 계										874	57	87	87	114	26	85	456	418	

■주택형 표시 안내

공고상(청약 시) 주택형	084.9132B	084.7856C	116.4552	117.4509
약식 표기	84B	84C	116	117

-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주택전시관 및 카달로그 또는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거공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주택형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표기 방식(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 공급 신청 시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 상 주택형(㎡)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 x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의 지상층 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등 주민공동시설, 보안 및 설비관련시설,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등 면적입니다.
- ※ 각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위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면적 표현은 소수점 4째 자리까지 제곱미터(㎡)로 표현되며(면적산출 근거에 의해 소수점 5째 자리에서 버림 처리), 기타 공용면적을 세대별로 분배할 경우 주거전용면적 비율 기준으로 소수점 4째 자리까지 산출 후 전체 총면적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강제 조정하여 오차를 최소화합니다.
- ※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위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경우에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 단위 조정으로 인한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습니다.(단, 정산시 정산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적용하지 않음.)
-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층·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및 청약 순위별로 접수하여 관계 법령 등에 의거하여 동·호수가 배정됩니다.
- ※ 특별공급 미 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주택형	동호 라인별	층수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
								5%	5%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30%
				대지비	건축비	부가가치세	계	계약시	30일 이내	2022-03-25	2022-07-25	2023-01-25	2023-09-25	2023-12-22	2024-04-25	입주지정시
84.9132 [84B]	101동 1,4호 102동 1,2,3호 103동 2,3호 107동 1,2,3,6호 108동 1,4호	1층	3	53,844,061	277,865,939		331,710,000	16,585,500	16,585,500	33,171,000	33,171,000	33,171,000	33,171,000	33,171,000	33,171,000	99,513,000
		1층(101동 1호, 102동 1,2,3호,103 동2,3호,108동 1호)	7	53,844,061	288,865,939		342,710,000	17,135,500	17,135,500	34,271,000	34,271,000	34,271,000	34,271,000	34,271,000	34,271,000	102,813,000
		2층	10	53,844,061	277,865,939		331,710,000	16,585,500	16,585,500	33,171,000	33,171,000	33,171,000	33,171,000	33,171,000	33,171,000	99,513,000
		3층	10	53,844,061	288,865,939		342,710,000	17,135,500	17,135,500	34,271,000	34,271,000	34,271,000	34,271,000	34,271,000	34,271,000	102,813,000
		3층(107동 6호,108 동 4호)	2	53,844,061	297,865,939		351,710,000	17,585,500	17,585,500	35,171,000	35,171,000	35,171,000	35,171,000	35,171,000	35,171,000	105,513,000
		4층	12	53,844,061	288,865,939		342,710,000	17,135,500	17,135,500	34,271,000	34,271,000	34,271,000	34,271,000	34,271,000	34,271,000	102,813,000
		4층(101동 4호)	1	53,844,061	304,865,939		358,710,000	17,935,500	17,935,500	35,871,000	35,871,000	35,871,000	35,871,000	35,871,000	35,871,000	107,613,000
		5층	13	53,844,061	297,865,939		351,710,000	17,585,500	17,585,500	35,171,000	35,171,000	35,171,000	35,171,000	35,171,000	35,171,000	105,513,000
		6층	13	53,844,061	304,865,939		358,710,000	17,935,500	17,935,500	35,871,000	35,871,000	35,871,000	35,871,000	35,871,000	35,871,000	107,613,000
		7층	13	53,844,061	304,865,939		358,710,000	17,935,500	17,935,500	35,871,000	35,871,000	35,871,000	35,871,000	35,871,000	35,871,000	107,613,000
		8층 ~ 10층	39	53,844,061	309,865,939		363,710,000	18,185,500	18,185,500	36,371,000	36,371,000	36,371,000	36,371,000	36,371,000	36,371,000	109,113,000
		11층 이상	145	53,844,061	312,865,939		366,710,000	18,335,500	18,335,500	36,671,000	36,671,000	36,671,000	36,671,000	36,671,000	36,671,000	110,013,000
	102동 6호 103동 1,6호 108동 5호	1층(108동 5호)	1	53,844,061	284,865,939		338,710,000	16,935,500	16,935,500	33,871,000	33,871,000	33,871,000	33,871,000	33,871,000	33,871,000	101,613,000
		1층(103동 1호)	1	53,844,061	295,865,939		349,710,000	17,485,500	17,485,500	34,971,000	34,971,000	34,971,000	34,971,000	34,971,000	34,971,000	104,913,000
		2층	2	53,844,061	284,865,939		338,710,000	16,935,500	16,935,500	33,871,000	33,871,000	33,871,000	33,871,000	33,871,000	33,871,000	101,613,000
		3층	2	53,844,061	295,865,939		349,710,000	17,485,500	17,485,500	34,971,000	34,971,000	34,971,000	34,971,000	34,971,000	34,971,000	104,913,000
		4층	2	53,844,061	295,865,939		349,710,000	17,485,500	17,485,500	34,971,000	34,971,000	34,971,000	34,971,000	34,971,000	34,971,000	104,913,000
		4층(102동~103동 6호)	2	53,844,061	311,865,939		365,710,000	18,285,500	18,285,500	36,571,000	36,571,000	36,571,000	36,571,000	36,571,000	36,571,000	109,713,000
		5층	4	53,844,061	304,865,939		358,710,000	17,935,500	17,935,500	35,871,000	35,871,000	35,871,000	35,871,000	35,871,000	35,871,000	107,613,000
		6층	4	53,844,061	311,865,939		365,710,000	18,285,500	18,285,500	36,571,000	36,571,000	36,571,000	36,571,000	36,571,000	36,571,000	109,713,000
		7층	4	53,844,061	311,865,939		365,710,000	18,285,500	18,285,500	36,571,000	36,571,000	36,571,000	36,571,000	36,571,000	36,571,000	109,713,000
		8층 ~ 10층	12	53,844,061	316,865,939		370,710,000	18,535,500	18,535,500	37,071,000	37,071,000	37,071,000	37,071,000	37,071,000	37,071,000	111,213,000
		11층 이상	50	53,844,061	319,865,939		373,710,000	18,685,500	18,685,500	37,371,000	37,371,000	37,371,000	37,371,000	37,371,000	37,371,000	112,113,000
84.7856 [84C]	101동 2,3호 102동 4,5호 107동 4,5호 108동 2,3호	1층	4	53,763,210	273,276,790		327,040,000	16,352,000	16,352,000	32,704,000	32,704,000	32,704,000	32,704,000	32,704,000	32,704,000	98,112,000
		1층(107동 4,5호)	2	53,763,210	282,276,790		336,040,000	16,802,000	16,802,000	33,604,000	33,604,000	33,604,000	33,604,000	33,604,000	33,604,000	100,812,000
		2층	6	53,763,210	262,276,790		316,040,000	15,802,000	15,802,000	31,604,000	31,604,000	31,604,000	31,604,000	31,604,000	31,604,000	94,812,000
		3층	6	53,763,210	273,276,790		327,040,000	16,352,000	16,352,000	32,704,000	32,704,000	32,704,000	32,704,000	32,704,000	32,704,000	98,112,000
		3층(108동 2,3호)	2	53,763,210	282,276,790		336,040,000	16,802,000	16,802,000	33,604,000	33,604,000	33,604,000	33,604,000	33,604,000	33,604,000	100,812,000
		4층	8	53,763,210	273,276,790		327,040,000	16,352,000	16,352,000	32,704,000	32,704,000	32,704,000	32,704,000	32,704,000	32,704,000	98,112,000
		5층	8	53,763,210	282,276,790		336,040,000	16,802,000	16,802,000	33,604,000	33,604,000	33,604,000	33,604,000	33,604,000	33,604,000	100,812,000
		6층	8	53,763,210	289,276,790		343,040,000	17,152,000	17,152,000	34,304,000	34,304,000	34,304,000	34,304,000	34,304,000	34,304,000	102,912,000
		7층	8	53,763,210	289,276,790		343,040,000	17,152,000	17,152,000	34,304,000	34,304,000	34,304,000	34,304,000	34,304,000	34,304,000	102,912,000
		8층 ~ 10층	24	53,763,210	294,276,790		348,040,000	17,402,000	17,402,000	34,804,000	34,804,000	34,804,000	34,804,000	34,804,000	34,804,000	104,412,000
		11층 이상	98	53,763,210	297,276,790		351,040,000	17,552,000	17,552,000	35,104,000	35,104,000	35,104,000	35,104,000	35,104,000	35,104,000	105,312,000
	103동 4,5호	1층	2	53,763,210	280,276,790		334,040,000	16,702,000	16,702,000	33,404,000	33,404,000	33,404,000	33,404,000	33,404,000	33,404,000	100,212,000

		2층	2	53,763,210	269,276,790		323,040,000	16,152,000	16,152,000	32,304,000	32,304,000	32,304,000	32,304,000	32,304,000	32,304,000	96,912,000
		3층 ~ 4층	4	53,763,210	280,276,790		334,040,000	16,702,000	16,702,000	33,404,000	33,404,000	33,404,000	33,404,000	33,404,000	33,404,000	100,212,000
		5층	2	53,763,210	289,276,790		343,040,000	17,152,000	17,152,000	34,304,000	34,304,000	34,304,000	34,304,000	34,304,000	34,304,000	102,912,000
		6층	2	53,763,210	296,276,790		350,040,000	17,502,000	17,502,000	35,004,000	35,004,000	35,004,000	35,004,000	35,004,000	35,004,000	105,012,000
		7층	2	53,763,210	296,276,790		350,040,000	17,502,000	17,502,000	35,004,000	35,004,000	35,004,000	35,004,000	35,004,000	35,004,000	105,012,000
		8층 ~ 10층	6	53,763,210	301,276,790		355,040,000	17,752,000	17,752,000	35,504,000	35,504,000	35,504,000	35,504,000	35,504,000	35,504,000	106,512,000
		11층 이상	24	53,763,210	304,276,790		358,040,000	17,902,000	17,902,000	35,804,000	35,804,000	35,804,000	35,804,000	35,804,000	35,804,000	107,412,000
116.4552 [116]	104동 1호 106동 4호	1층	1	140,906,056	295,530,858	29,553,086	465,990,000	23,299,500	23,299,500	46,599,000	46,599,000	46,599,000	46,599,000	46,599,000	46,599,000	139,797,000
		2층	1	134,253,696	281,578,458	28,157,846	443,990,000	22,199,500	22,199,500	44,399,000	44,399,000	44,399,000	44,399,000	44,399,000	44,399,000	133,197,000
		3층	1	137,882,256	289,188,858	28,918,886	455,990,000	22,799,500	22,799,500	45,599,000	45,599,000	45,599,000	45,599,000	45,599,000	45,599,000	136,797,000
		3층(106동 4호)	1	140,906,056	295,530,858	29,553,086	465,990,000	23,299,500	23,299,500	46,599,000	46,599,000	46,599,000	46,599,000	46,599,000	46,599,000	139,797,000
		4층	2	137,882,256	289,188,858	28,918,886	455,990,000	22,799,500	22,799,500	45,599,000	45,599,000	45,599,000	45,599,000	45,599,000	45,599,000	136,797,000
		5층	2	140,906,056	295,530,858	29,553,086	465,990,000	23,299,500	23,299,500	46,599,000	46,599,000	46,599,000	46,599,000	46,599,000	46,599,000	139,797,000
		6층	2	143,325,096	300,604,458	30,060,446	473,990,000	23,699,500	23,699,500	47,399,000	47,399,000	47,399,000	47,399,000	47,399,000	47,399,000	142,197,000
		7층	2	143,325,096	300,604,458	30,060,446	473,990,000	23,699,500	23,699,500	47,399,000	47,399,000	47,399,000	47,399,000	47,399,000	47,399,000	142,197,000
		8층 ~ 10층	6	145,139,376	304,409,658	30,440,966	479,990,000	23,999,500	23,999,500	47,999,000	47,999,000	47,999,000	47,999,000	47,999,000	47,999,000	143,997,000
		11층 이상	27	146,348,896	306,946,458	30,694,646	483,990,000	24,199,500	24,199,500	48,399,000	48,399,000	48,399,000	48,399,000	48,399,000	48,399,000	145,197,000
	104동 4호 105동 1,4호 106동 1호	1층	4	143,627,476	301,238,658	30,123,866	474,990,000	23,749,500	23,749,500	47,499,000	47,499,000	47,499,000	47,499,000	47,499,000	47,499,000	142,497,000
		2층	4	136,975,116	287,286,258	28,728,626	452,990,000	22,649,500	22,649,500	45,299,000	45,299,000	45,299,000	45,299,000	45,299,000	45,299,000	135,897,000
		3층 ~ 4층	8	140,603,676	294,896,658	29,489,666	464,990,000	23,249,500	23,249,500	46,499,000	46,499,000	46,499,000	46,499,000	46,499,000	46,499,000	139,497,000
		5층	4	143,627,476	301,238,658	30,123,866	474,990,000	23,749,500	23,749,500	47,499,000	47,499,000	47,499,000	47,499,000	47,499,000	47,499,000	142,497,000
		6층	4	146,046,516	306,312,258	30,631,226	482,990,000	24,149,500	24,149,500	48,299,000	48,299,000	48,299,000	48,299,000	48,299,000	48,299,000	144,897,000
		7층	4	146,046,516	306,312,258	30,631,226	482,990,000	24,149,500	24,149,500	48,299,000	48,299,000	48,299,000	48,299,000	48,299,000	48,299,000	144,897,000
		8층 ~ 10층	12	147,860,796	310,117,458	31,011,746	488,990,000	24,449,500	24,449,500	48,899,000	48,899,000	48,899,000	48,899,000	48,899,000	48,899,000	146,697,000
		11층 이상	61	149,070,316	312,654,258	31,265,426	492,990,000	24,649,500	24,649,500	49,299,000	49,299,000	49,299,000	49,299,000	49,299,000	49,299,000	147,897,000
		1층	6	127,374,551	267,150,408	26,715,041	421,240,000	21,062,000	21,062,000	42,124,000	42,124,000	42,124,000	42,124,000	42,124,000	42,124,000	126,372,000
		2층	6	120,722,191	253,198,008	25,319,801	399,240,000	19,962,000	19,962,000	39,924,000	39,924,000	39,924,000	39,924,000	39,924,000	39,924,000	119,772,000
		3층 ~ 4층	12	124,350,751	260,808,408	26,080,841	411,240,000	20,562,000	20,562,000	41,124,000	41,124,000	41,124,000	41,124,000	41,124,000	41,124,000	123,372,000
117.4509 [117]	104동 2,3호 105동 2,3호 106동 2,3호	5층	6	127,374,551	267,150,408	26,715,041	421,240,000	21,062,000	21,062,000	42,124,000	42,124,000	42,124,000	42,124,000	42,124,000	42,124,000	126,372,000
		6층	6	129,793,591	272,224,008	27,222,401	429,240,000	21,462,000	21,462,000	42,924,000	42,924,000	42,924,000	42,924,000	42,924,000	42,924,000	128,772,000
		7층	6	129,793,591	272,224,008	27,222,401	429,240,000	21,462,000	21,462,000	42,924,000	42,924,000	42,924,000	42,924,000	42,924,000	42,924,000	128,772,000
		8층 ~ 10층	18	131,607,871	276,029,208	27,602,921	435,240,000	21,762,000	21,762,000	43,524,000	43,524,000	43,524,000	43,524,000	43,524,000	43,524,000	130,572,000
		11층 이상	98	132,817,391	278,566,008	27,856,601	439,240,000	21,962,000	21,962,000	43,924,000	43,924,000	43,924,000	43,924,000	43,924,000	43,924,000	131,772,000

- ※ 본 아파트의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57조 규정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총 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의결한 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차등률 두어 당사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미포함된 금액이며,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당사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상기 공급금액에는 마이너스옵션품목이 포함된 가격이며, 마이너스옵션품목은 분양계약자 선택사항입니다.
- ※ 상기 공급금액은 추가선택품목(옵션) 비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이며, 추가 선택품목(옵션)은 계약 체결 시 계약자가 선택에 따라 별도의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관리사무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전기/기계실 등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리사무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전기/기계실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기준입니다.(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하였습니다.)

■ 공통 유의사항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 보증을 득한 아파트(공동주택)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계약 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 세대 또는 동의 공용 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일 주택형의 해당 세대 주거공용 부분도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형 표기방식을 주거전용면적으로 표기하였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사업계획변경,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 등의 부득이한 경우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 또는 소수점이하의 면적 증감은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그 외 면적은 중심선 치수로 산정합니다. 공급면적 및 대지 공유지분은 공부정리 절차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경우에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인한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습니다.
- 중도금은 해당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습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90%는 입주 당일에 받으며,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당사가 본 아파트 “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도 시행자(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합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사업주체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입니다.
-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구조입니다.
-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실입주일(키 불출일 또는 입주증발급일 중 빠른날)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다음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하며, 연체료 납부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바랍니다.)
- 수분양자가 중도금 금융대출을 원하는 경우,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세부일정 및 내용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 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미납 시 연체료 가산)
-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사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분양대금 중 선납한 금액 및 다른 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주택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고, 별도의 이자나 할인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모든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 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 분		84B	84C	116	117	합 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장애인	6	4	0	0	10
	국가유공자	6	4	0	0	10
	국가보훈대상	6	4	0	0	10
	장기복무제대군인	6	4	0	0	10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6	3	0	0	9
	중소기업근로자	5	3	0	0	8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35	22	15	15	87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35	22	15	15	87
신혼부부 특별공급		70	44	0	0	11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0	7	4	5	26
생애최초 특별공급		52	33	0	0	85
합 계		237	150	34	35	456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혼부부)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생애최초)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의 지역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경제자유구역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자격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table><tr><th>구 분</th><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th>그 밖의 광역시</th><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tr><tr><td>전용면적 85㎡ 이하</td><td>300만원</td><td>250만원</td><td>200만원</td></tr><tr><td>전용면적 102㎡ 이하</td><td>600만원</td><td>400만원</td><td>300만원</td></tr><tr><td>전용면적 135㎡ 이하</td><td>1,000만원</td><td>700만원</td><td>400만원</td></tr><tr><td>모든면적</td><td>1,500만원</td><td>1,000만원</td><td>500만원</td></tr></table>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57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추천기관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 장애인 : 경상북도 장애인복지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처 경북남부보훈지청 복지과
- 중소기업 근로자 : 대구·경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8조 :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87세대

- 대상자 : 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외국인의 경우에는 (국내)무주택자를 말함)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기관장이 선정한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 투자 촉진법」 제2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2항 제5호 및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기업종사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세부기준」에 해당하는 자.

1. 해당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을 말한다.)의 종사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지역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자
 - 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또는 국제고등학교의 교원 또는 종사자
 - 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개설된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종사자
 - 다. 경제자유구역 안에 소재하는 국제연합기구,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기구, 그 밖의 국제기구 종사자
- ②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세부기준」 제3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8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 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라 함은 특별공급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기업의 본사 또는 지사의 주소가 경제자유구역 안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된 기업)을 말한다.(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내 연구소만 소재하는 경우는 제외)
 - 나. 「종사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로서 1년 이상을 당해기업에 종사한 근로자를 말한다.
 - 다. 「약국」이라 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규정에 따라 개설된 외국인 전용 약국을 말한다.
 - 라. 「의료기관」이라 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규정에 따라 개설된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을 말한다.
 - 마. 「교육기관」이라 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또는 국제고등학교를 말한다.

■ 신청 및 당첨자 선정방법

1.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먼저 사업주체에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주체는 특별공급 신청자 현황을 작성하여 대구경북 자유구역청장에게 제출합니다.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당첨 확정자 및 예비 대상자가 선정되어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사업주체에 대상자를 통보합니다.
 3.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은 사업주체에 통보된 자만 특별공급 신청일에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며, 대상자(당첨 확정자 및 예비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접수일에 인터넷 청약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청약 미신청시 계약불가)
 4.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하므로 사업주체 및 전산관리지정기관(한국부동산원)은 당첨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 소형·저가주택 소유 시 유주택자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미적용)
-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신청자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신청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신청인 경우),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무주택서약서, 경제자유구역특별공급신청서 (당사 홈페이지 다운로드), 청약통장 가입 증빙확인서류, 경제자유구역 내 근무경력 증명서
내국인	신분증,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도장,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일 경우 배우자 등본 포함),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사실증명서

• 유의사항

1. 「주택법」 제64조(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의 규정에 준용하며, 특별공급 대상자로 확정되어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가. 소유권 보존등기 이전에 해당기업 등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출 또는 퇴직하는 경우.
나. 제출 서류의 위조 또는 허위의 사실이 판명되거나, 주택소유사실여부 은닉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경우.
2. 특별공급 대상자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그 주택에 대하여 당초 계약금액으로 환매하여야 합니다.
3.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의 신청은 특별공급 청약접수 전 사업주체에 신청서를 제출 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의 대상자 적합여부 확인을 받은 자가 인터넷을 통해 접수하여야 합니다.
4.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 라목에 의거 “당첨자”로 간주되며, 신청당시 제출한 서류 및 주택소유 등으로 인한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에 당첨자로서 일체의 권리는 소멸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명시된 기간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5.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청약신청자격에 대한 심사 후 부적격 당첨자로 반명된 경우에 당첨자로서의 일체 모든권리는 소멸되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87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포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태어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 태어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 당첨자 선정방법

- 해당지역(포항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경상북도)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 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 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외의 경우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20% 범위) : 114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포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당첨자 선정 방법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 합니다.
-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를 포함)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해당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포항시) 거주자
-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2021.02.25. 이후 신규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적용)

공급유형		구분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6,030,160원	7,094,205원	7,094,205원	7,393,647원	7,778,023원	8,162,399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초과~120% 이하	6,030,161원 ~ 7,236,192원	7,094,206원 ~ 8,513,046원	7,094,206원 ~ 8,513,046원	7,393,648원 ~ 8,872,376원	7,778,024원 ~ 9,333,628원	8,162,400원 ~ 9,794,879원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40%이하	6,030,161원 ~ 8,442,224원	7,094,206원 ~ 9,931,887원	7,094,206원 ~ 9,931,887원	7,393,648원 ~ 10,351,106원	7,778,024원 ~ 10,889,232원	8,162,400원 ~ 11,427,359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60%이하	7,236,193원 ~ 9,648,256원	8,513,047원 ~ 11,350,728원	8,513,047원 ~ 11,350,728원	8,872,377원 ~ 11,829,835원	9,333,629원 ~ 12,444,837원	9,794,880원 ~ 13,059,838원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3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26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포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해야 함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포항시) 거주자가 우선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된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5% 범위) : 85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포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이하인 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해야 함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2021.02.25. 이후 신규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적용)

공급유형	구분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생애최초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130% 이하	7,839,208원	9,222,467원	9,222,467원	9,611,741원	10,111,430원	10,611,119원
생애최초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130% 초과~160% 이하	7,839,209원~ 9,648,256원	9,222,468원~ 11,350,728원	9,222,468원~ 11,350,728원	9,611,742원~ 11,829,835원	10,111,431원~ 12,444,837원	10,611,120원~ 13,059,838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포항시)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신청시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해당자)			
공통서류	○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접수 장소에 비치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바랍니다.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본인발급용)
	○		주민등록증	본인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www.applyhome.co.kr) 장애인, 국가유공자, 철거주택소유자 제외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에 의거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 해당지역 우선공급 신청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 기록 대조일을 본인 출생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하여 발급
	○			직계존비속	
기관추천 특별공급	○		해당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본인	장애인 특별공급의 경우 필히 해당 지자체장이 발급한 장애인증명서만 인정함, 복지카드 등 기타서류 불가, 국가유공자는 보훈청 관리명단으로 접수함
		○	복무확인서	본인	해당 주택건설지역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다자녀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경우에만 자녀로 인정함)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만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간에서 발급된 임신진단서, 출산이행각서는 주택전시관비치
신혼부부 특별공급		○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혼인신고일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기본증명서	자녀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확인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또는 배우자)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소득증빙 서류	세대원	※ 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만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혼인사실여부확인
	○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청약자 본인의 소득세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 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 ※FAX 수신문서 등 복사본 접수 불가, 서류접수 시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
		○		자녀	만 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비사업자의 경우(건본주택에 비치)
	○		인감증명서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인감도장	청약자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고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주민등록증	대리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인장	대리인	

* 상기 모든 증명서류(계약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2005. 06. 28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초본 1통 필요합니다.

* 주택공급 신청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원(일정기간 거주 증명)이 필요합니다.

Ⅲ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포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 청약신청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의 지역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입주자저축 순위별 요건

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영주택	1순위	전 주택형, (전용 85㎡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 가점제 (40%) 및 추첨제 (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전용 85㎡초과	■ 전용면적 85㎡ 초과 : 추첨제 (100%) 적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전 주택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0조 제1항 별표2)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15.12.29)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0조제1항 별표2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따라 지역별, 주택규모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예금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변경 없이 청약 가능합니다.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구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 자녀 또는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만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④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

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에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선 정 방 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4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적용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공급하되,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적용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포함시 거주 신청자가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전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건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건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 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 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의 지역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

IV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경제자유구역, 다자녀가구,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1.11.24.(수)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사업주체 건본주택 : 10:00~14:0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사업주체 건본주택
일반공급	1순위	2021.11.25(목) 09:00~17:30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대행은행 창구
	2순위	2021.11.26(금) 09:00~17:30		

-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건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9: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또는 ③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모든 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②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일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 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일정 및 계약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계약체결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경제자유구역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일시: 2021.12.02.(목)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및 네이버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일시 - 2021.12.14.(화)~2021.12.17.(금) (10:00~16:00)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장소 : 경북 포항시 남구 상도동 721, 722번지)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주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1.12.02 (목) ~ 2021.12.11 (토) (10일간)
인터넷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을 통해 당첨에 따른 각종 제한 사항은 연중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1.12.02 (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여야 합니다.

VI

계약체결 절차 및 유의사항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구분	계약기간	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2021.12.14.(화)~ 2021.12.17.(금), 4일간 10:00 ~ 16:00	- 당사 견본주택 (장소 : 경북 포항시 남구 상도동 721, 722번지)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계약 시 구비서류 안내

구 분		서류유형		계 약 시 구 비 사 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시	공통	○		- 계약금 입금 영수증
		○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공동주택 계약용)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서명인증서 1통(외국인에 한합니다.)] ※ 본인 발급분에 한하여 가능하며, 대리발급분은 절대 불가함.
		○		- 인감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본인 서명)
		○		-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 주민등록표등본 1통
		○		- 주민등록초본(주소지 변동 내역 모두 포함하여 발급)
		○		- 출입국사실증명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는 필수
			○	-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 한합니다.)
			○	- 가족관계증명서 1통(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 유무확인 불가 시)
			○	- 배우자 직계존속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배우자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혼인관계증명서 1통(만 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초본 각 1통(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단, 직계비속은 만 30세 이상자에 한합니다.)
			○	- 군 복무기간(10년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1부,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1부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1년 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신청 시)
			○	- 재외동포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부)
			○	- 외국인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 무허가건물 확인서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	- 소형, 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증명원 등)
			○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3자 대리계약시 추가사항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서류 추가 제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아파트계약 위임용 1통) - 계약자의 주민등록증 및 인감도장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양식은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	--	--	--------------

- * 상기 모든 증명서류(계약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계약시 용도를 직접 기재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계약시 외국인의 구비사항은 공급신청 시 구비사항과 동일합니다.)
- * 2005. 06. 28.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추후, 계약 시 계약구비서류 변경 또는 추가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체결 시 대리인 방문이 불가하며 본인이 방문하여야 합니다.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전산검색 등 청약자격 유무 판단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 이후라도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건본주택에 내방하여 제출함으로써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주택당첨자는 계약체결 후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고, 당첨된 청약 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소명할 경우, 당사에서 판단하여 한국부동산원에 당첨자명단에서 제외 요청할 예정이며,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의 지역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로 기재한 경우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상기 기준에 따라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사실 유무 판단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및 당첨 사실을 포함합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관련예금으로 청약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합니다.)
-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합니다.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시 체결된 건물의 공급면적 및 대지 공유지분은 공부정리 절차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경우에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 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인한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습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이나 중, 개축 또는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조망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소음·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 등으로 생활 환경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명칭 및 동·호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입주 전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소명기간이 지난 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천예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천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합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방법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변심, 귀책사유 등으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확장 계약 체결 및 마이너스 옵션을 미선택한 세대에 한하여 사업주체가 제공하는 서비스품목제공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시 계약자가 선택하는 마감재 선택사항 및 발코니확장 계약, 플러스옵션 계약, 마이너스옵션 계약은 변경이 불가하며, 공사에 착수하거나 별도품목 상품을 제작업체에 주문 또는 발주한 이후에는 해제가 불가하므로 이점 유념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분양계약서 및 계약구비서류를 준용합니다.
- 사업주체가 마감자재업체의 선정 및 시공상의 고려 등의 사유로 계약자가 계약시 선택한 마감자재의 선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이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기로 하며, 이 경우 통지의 방법 및 효과 등은 분양계약서를 준용합니다. 이 때, 계약자가 사업주체의 위 통지를 수령하거나 또는 수령 간주된 후 2주내에 사업주체에 대하여 서면으로써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자가 마감자재 등 선택사항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 ①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②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 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지역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④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계약 체결 전 서류심사 및 부적격 여부 확인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 체결 이전에 건본주택에 방문하시어 아래 계약 시 구비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해당 거주기간,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상기 기간 내에 서류심사를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체결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불이익(당첨 및 계약 취소, 당첨일로부터 6개월간 당첨 제한 등)됨을 유념하시고, 계약체결 전 서류접수기간 내에 건본주택에 방문하시어 관련 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자격 적격성 여부를 점검 받으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지정된 분양대금 납부일(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아래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아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분양대금지급과 관련하여 별도의 특약이 있을 경우 특약에 따른 분양대금의 납부방법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받으며 계약자가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건본주택에서 현장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 또는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 계약금 미납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인한 기타 모든 문제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단, 무통장 입금자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 본 주택의 중도금은 당사와 대출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대출 승인 시,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현금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는 아래 금융기관 및 계좌번호에 변동이 있을 경우 계약자에게 전자등기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통지하기로 하며, 이 경우 잔여 분양대금은 변경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만일 계약자의 계약서상의 주소지가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주소지 변경 후 1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서면(주민등록등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는 각 분양대금의 납부기일을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공급계약서에 따른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 만일, 분양대금을 과오납할 경우, 당사로 환불신청서(당사양식) 및 구비서류(입금확인증, 통장사본, 신분증 등)를 제출하여야하며, 제출일로부터 30영업일 이내 환불 예정입니다.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관리계좌(계약금, 중도금, 잔금)	광주은행	1107-021-277114	디아이산업(주)(공동명의예금,외2업체,디아이주택개발(주),디아이하우징(주))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103동 201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030201홍길동'으로 기재)

-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모집공고 상 중도금대출 이자에 관한 사항은 당사의 마케팅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건본주택 오픈 시, 관련 홍보책자 등을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당사 건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할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계약자가 용자를 신청할 경우에,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가 시장상황에 따라 대출은행을 선정하지 못할 경우, 계약자는 본인 책임 하에 분양대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사업주체에게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기관의 내부규정 또는 계약자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대출불가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계약자 본인의 책임 하에 조달하여, 분양계약서상 명시된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각 납부회차별로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중도금 대출, 약정일, 약정금액 등을 계약자에게 통보할 의무가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모든 경비는 금융기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보증서 발급 제한, 금융권의 대출 부적격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계약서상 명시된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분양대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 하여, 사업주체는 별도로 계약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으며 계약자가 분양대금 미납 시 분양계약서상 명시된 연체료율에 의거하여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계약자는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 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이자를 사업주체가 대납할 경우, 그 대납기간은 최초 대출이자 발생일로부터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전일까지로 하며, 계약자는 입주를 하기 위해 잔금을 납부하는 경우, 잔금에 사업주체가 대납한 중도금대출이자를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분양권 전매, 상속, 증여 등에 따라 계약자가 변경될 당시 중간 정산을 사업주체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만일,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당사가 대납한 중도금대출이자를 미납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서상 명시된 연체료율에 의거하여 연체료를 추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이후부터는 계약자의 실제입주일과 관계없이 계약자가 대출이자, 보증수수료를 부담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대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10%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며, 계약금 10% 미납 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설령 계약금을 납부하였더라도 입금자명이 '동호수' 또는 '계약자성명'이 아니라 확인이 불가할 경우 계약금 미납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 불이익은 계약자에게 있음.)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중도금대출신청 관련 안내에 대한 의무가 없으며 "개인사유로 인해 대출미신청, 지연신청" 또는 "금융거래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따른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사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추후 사업주체 또는 해당 은행의 사정에 따라, 중도금대출은행이 변경 및 취소 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별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 중도금 대출은 사업주체와 금융기관간 협의내용에 따라 만기가 지정되어 있으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만기 연장이 불가능할 수 있고 사업주체는 만기 연장의 의무가 없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만료일이 경과하도록 중도금대출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체와 금융기관간 사전 협의한 대출기간이 만료되어 신용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다.
- 일정 시점 이후 또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중도금 대출승계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의 보증에 의하여 대출금용기관이 알선된 경우 계약자가 대출금용기관에 대해 이자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자의 여신거래약정 위반, 기타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인하여 대출금용기관이 사업주체에게 보증채무의 이행 또는 대위 변제를 요구하여 사업주체가 이를 이행한 경우 분양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였더라도 계약금 미납, 보증서 발급 불가, 대출한도 부족, 신용상의 문제 등 대출 결정사유가 발생(또는 발견될)할 경우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출이 실행되지 않음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분양주택 건설을 위해 광주은행으로부터 건설자금(사업대지비,기타사업비)을 지원받은 주택으로, 주택형별 대출금액은 84.9132㎡은 세대당 ₩33,385,621원, 84.7856㎡은 세대당 ₩33,335,452원, 116.4552㎡은 세대당 ₩45,787,100원, 117.4509㎡은 세대당 ₩46,178,583원이 대출되며 준공 후 입주자에 대한 또는 사업주체가 상환예정임.

■ 입주자 사전점검 관련

- 사전 방문점검안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에 따라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방수공사 및 위생기구공구 공사등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자의 입주 개시 2개월 전에 실 입주월을 통보하고, 실 입주 45일 전까지 입주자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입주예정일 : 2024년 11월 예정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할 예정입니다.)

-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사업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해 분양계약서 전문에서 정한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3개월을 초과하는 날로부터 입주가능일까지 기 납부한 대금에 대하여 분양계약서상 명시된 연체요율에 의거 계약자에게 지체상금을 지불하거나 이를 분양 잔여대금에서 공제합니다.
- 인허가청 또는 관련 기관(교육청)에서 입주예정일을 앞당기길 요청할 경우 사전 공지를 통해 앞당길 수 있으며 납기일이 미도래 한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의 납부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 계약자가 이를 배상합니다. 단,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실입주일 또는 잔금납부일 또는 입주증발급일 중 빠른날”로부터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를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추후 당사가 안내하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입주지정기간 내에 입주할 경우 실입주일 또는 잔금납부일 또는 입주증발급일 중 빠른날) 세대 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입주여부와 상관없이 일반관리비, 세대관리비(전기/수도/가스/난방 등 포함) 및 제세공과금 등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에는 실입주일 또는 입주증발급일 중 빠른날로부터 관리비가 부과되며, 입주 전 인테리어 공사를 선행할 경우 인테리어공사일로부터 관리비가 부과되고, 인테리어공사시 발생하는 쓰레기, 폐기물 등은 계약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세대 내 가스사용량은 원격검침식으로 검침하며, 검침 데이터는 도시가스사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내에 잔여 분양대금(중도금 및 잔금), 연체료 등을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 및 비용(중도금 대출 상환영수증 또는 중도금대출에서 담보대출로 대환되는 은행확인 서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 및 비용, 선수관리비 납부영수증,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 영수증, 중도금 대출이자 납부영수증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납부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시 사업주체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선정된 관리주체와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가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관리태만으로 인한 문제(동파, 결로, 분실, 도난, 파손)는 사업주체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Ⅶ 추가 선택품목 계약 및 마이너스 옵션

☐ 발코니 확장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원, VAT포함)

구 분	발코니 확장금액	계약금	잔 금
주택형(㎡)		계약시	입주지정일
84B	8,040,000	1,000,000	7,040,000
84C	6,710,000	1,000,000	5,710,000
116	12,420,000	1,000,000	11,420,000
117	8,170,000	1,000,000	7,170,000

■ 발코니 확장 납부계좌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 대금 납부계좌 (계약금, 잔금)	광주은행	1107-021-277108	디아이산업(주)(공동명의예금,외2업체,디아이주택개발(주),디아이하우징(주))

■ 발코니 확장 유의사항

-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4호, 제46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구조 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총금액으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 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 계약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기간 동안 발코니확장 옵션 공급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 발코니확장 비용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확장 공사에 공급가격은 확장으로 인한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확장 비용 및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품귀 또는 신제품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나 동질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풍통, 선풍통BOX 및 드레인 등이 설치되어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시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 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 확장비용은 분양가와 별도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이후라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외관의 통일성 및 시각적 안정감 등을 위해 세대별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하였으며, 비확장 선택시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는 별도 계약품목으로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이며,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고, 이 경우 분양계약자가 납부 하여야합니다.(단,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 계약 불가합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시 확장부위는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나 비확장형 선택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사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시에는 「건축법시행령」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및 난방부담금 등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부담 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 및 마이너스 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련 법령에 맞게 시공되어야 하며,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 및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해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시행자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얻었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 및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 및 마이너스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풍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될 수 있으며,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확장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별도의 수전 및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에 따른 계약조건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견본주택에서 확인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시 동일평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및 추가선택사항 옵션품목

■ 시스템에어컨 옵션품목

(단위 :원, VAT포함)

타입	옵션 선택	시스템 에어컨 적용실(실내기)	설치 대수	일반형			공기청정형		
				옵션금액 (세대단가)	계약금 (계약시)	잔금 (입주시)	옵션금액 (세대단가)	계약금 (계약시)	잔금 (입주시)
84B	옵션1	거실, 주방, 침실1	3대	4,800,000	1,000,000	3,800,000	5,800,000	1,000,000	4,800,000
	옵션2	거실, 주방, 침실1 + 침실2,3 중 택1	4대	6,200,000	1,000,000	5,200,000	7,500,000	1,000,000	6,500,000
	옵션3	거실, 주방, 침실1 + 침실2,3	5대	7,100,000	1,000,000	6,100,000	8,800,000	1,000,000	7,800,000
84C	옵션1	거실, 주방, 침실1	3대	4,800,000	1,000,000	3,800,000	5,800,000	1,000,000	4,800,000
	옵션2	거실, 주방, 침실1 + 침실2,3 중 택1	4대	6,200,000	1,000,000	5,200,000	7,500,000	1,000,000	6,500,000
	옵션3	거실, 주방, 침실1 + 침실2,3	5대	7,100,000	1,000,000	6,100,000	8,800,000	1,000,000	7,800,000
116	옵션1	거실, 주방, 침실1	3대	5,400,000	1,000,000	4,400,000	6,400,000	1,000,000	5,400,000
	옵션2	거실, 주방, 침실1 + 침실2,3,4,알파룸 중 택1	4대	6,300,000	1,000,000	5,300,000	7,700,000	1,000,000	6,700,000
	옵션3	거실, 주방, 침실1 + 침실2,3,4,알파룸 중 택2	5대	7,300,000	1,000,000	6,300,000	9,000,000	1,000,000	8,000,000
	옵션4	거실, 주방, 침실1 + 침실2,3,4,알파룸 중 택3	6대	8,600,000	1,000,000	7,600,000	10,600,000	1,000,000	9,600,000
	옵션5	거실, 주방, 침실1 + 침실2,3,4,알파룸	7대	9,500,000	1,000,000	8,500,000	11,800,000	1,000,000	10,800,000
117	옵션1	거실, 주방, 침실1	3대	5,400,000	1,000,000	4,400,000	6,400,000	1,000,000	5,400,000
	옵션2	거실, 주방, 침실1 + 침실2,3,4 중 택1	4대	6,300,000	1,000,000	5,300,000	7,700,000	1,000,000	6,700,000
	옵션3	거실, 주방, 침실1 + 침실2,3,4 중 택2	5대	7,300,000	1,000,000	6,300,000	9,000,000	1,000,000	8,000,000
	옵션4	거실, 주방, 침실1 + 침실2,3,4	6대	8,600,000	1,000,000	7,600,000	10,600,000	1,000,000	9,600,000

※ 시스템 에어컨 옵션품목 유/무상 적용은 당사의 마케팅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견본주택 오픈 시, 관련 홍보책자 등을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비확장 시 확장부위에 시공되는 추가품목임에 따라 구조상의 이유로 선택이 불가능한점을 알려드립니다.

※ 시스템 에어컨은 LG 또는 삼성제품으로 설치될 예정이며, 시스템 에어컨 선택 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반형 및 공기청정형 에어컨 실내기 장비는 같으며, 공기청정형 모델은 공기청정형 전용 패널로 시공됩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이하 시스템 에어컨 옵션) 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시스템 에어컨 옵션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 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은 발코니확장옵션 선택시 설치가능하며 설치위치는 해당 실내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기능상 장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및 기타 세대 내 조건에 따라 설치 위치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은 시공 상의 이유로 에어컨 공사시점에 선정된 신형모델로 설치됩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시, 기 선정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기본 및 옵션 선택사항에 따라 시스템 에어컨 적용실 외의 실에는 에어컨 배관이 미시공되며, 추후 계약자가 추가로 에어컨 설치 시 기존 에어컨 실외기에 연결하여 시공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가 옵션 선택 완료 후 임의로 에어컨을 추가 설치하여 실외기를 실외기실에 동시설치(2대설치)하여 냉방효율이 저하되어 기능상 장애 발생에 따른 하자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 제공되는 시스템 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시스템에어컨 계약이 불가하며,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또는 사업주체가 별도 지정한 기간 내 시스템 에어컨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설치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과는 별도 계약사항이며, 계약 후 사업주체가 공사에 착수하거나 별도품목 상품을 제작업체에 주문 또는 발주한 이후에는 계약의 변경 및 해제 또는 취소가 불가하므로 이점 유념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시스템 에어컨은 편의상 냉난방용으로 설치하였으며, 본 공사시 적용될 시스템에어컨은 난방기능이 없습니다.
- 상기 옵션품목의 계약조건(계약금 및 잔금의 납부금액 또는 납부일정, 계약체결 일정 등)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옵션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과는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계약사항이며, 아파트 공급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옵션계약도 자동으로 해제 또는 취소됩니다.
- 시스템에어컨 공사비에는 취득세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지자체로부터 계약자에게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사항 옵션품목

(1) 개별 추가선택사항 옵션품목

(단위 :원, VAT포함)

항목	위치	품목명		타입	옵션금액	계약금	잔금	비 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가전 및 가구	주방	택1	비스포크 키친핏 양문형냉장고(삼성) +비스포크 김치플러스(삼성)	전 주택형	4,600,000	600,000	4,000,000	- 미선택 시, 냉장고장 설치(도어 없음)
		택1	빌트인 콤비냉장고(삼성) 와인셀러(하부)+장식장(상부)	전 주택형 116, 117	700,000 2,000,000	100,000 200,000	600,000 1,800,000	- 비스포크 양문형냉장고 유상옵션 선택 시, 선택가능 - 미선택 시, 키큰장이 설치됩니다.
			BI 콤비냉장고+와인셀러(하부)+장식장(상부)	117	2,600,000	300,000	2,300,000	
			쿡탑 (인덕션2구,가스1구)	전 주택형	800,000	100,000	700,000	- 미선택 시, 기본 가스3구 쿡탑이 설치됩니다.
		쿡탑 (인덕션3구)	850,000		100,000	750,000		
		택1	스마트 오븐	전 주택형	400,000	100,000	300,000	
	스팀 오븐		600,000		100,000	500,000	- 미선택 시, 스마트오븐이 설치됩니다.	
	발코니2		하부장	84B, 84C	800,000	100,000	700,000	- 미선택 시, 기본마감(벽 : 도장마감, 바닥 : 타일마감)으로 시공됩니다.
			드럼건조기(삼성)+하부장(오픈형)		1,550,000	200,000	1,350,000	
	다용도실	택1	하부장	116	1,100,000	100,000	1,000,000	- 미선택 시, 기본마감(벽 : 도배마감, 바닥 : 타일마감)으로 시공됩니다.
			드럼건조기(삼성)+하부장		2,100,000	200,000	1,900,000	
			하부장	117	800,000	100,000	700,000	
			드럼건조기(삼성)+하부장		1,750,000	200,000	1,550,000	
	알파룸 /드레스룸	스타일러		84B, 84C, 116, 117	1,550,000	200,000	1,350,000	- 미선택 시, 84B, 117타입 악세서리함 설치 - 미선택 시, 84C타입 가구 FIX 패널 설치 - 미선택 시, 116타입 불박이장 설치
	공용욕실	택1	일반형 비데	전 주택형	200,000	100,000	100,000	
			일체형 비데		600,000	100,000	500,000	
	부부욕실	일체형 비데				600,000	100,000	500,000
발코니1	전동 빨래건조대		전 주택형	120,000	120,000	0		
인테리어	현관	현관 입구 마그네틱 패널		84B	800,000	100,000	700,000	
		현관 중문		116, 117	1,500,000	200,000	1,300,000	
	거실	택1	거실 아트월① 및 인테리어월①	84B	2,600,000	300,000	2,300,000	- 미선택 시, 거실 동일 도배지 마감 - 아트월 디자인에 따라 벽체 인테리어가 상이합니다.
			거실 아트월② 및 인테리어월①		2,800,000	300,000	2,500,000	
		택1	거실 아트월① 및 인테리어월①	84C	2,850,000	300,000	2,550,000	
			거실 아트월③ 및 인테리어월②		3,350,000	400,000	2,950,000	
		거실 아트월② 및 인테리어월①		116	3,450,000	400,000	3,050,000	
		거실 아트월③ 및 인테리어월②		117	3,450,000	400,000	3,050,000	
	주방	거실 복도 장식장		117	1,800,000	200,000	1,600,000	- 미선택 시, 거실 동일 도배지 마감
		택1	주방 바닥마감(타일)	84B, 84C	250,000	100,000	150,000	- 미선택 시, 기본 마루 시공
				116, 117	300,000	100,000	200,000	
			주방상판(엔지니어드스톤) +주방벽(엔지니어드스톤) + 고급싱크볼	84B, 84C	1,200,000	200,000	1,000,000	- 미선택 시, 상판 MMA+벽 타일_일반싱크볼 마감
			116, 117	1,550,000	200,000	1,350,000		
			주방상판(세라믹타일) +주방벽(세라믹타일) + 고급싱크볼	84B, 84C	2,100,000	300,000	1,800,000	- 미선택 시, 상판 MMA+벽 타일_일반싱크볼 마감
	116, 117	2,500,000	300,000	2,200,000				
	알파룸, 드레스룸, 다용도실	중문(알파룸)		116	1,500,000	200,000	1,300,000	
		중문(드레스룸)		84B, 84C, 117	750,000	200,000	550,000	
중문(다용도실)		116, 117	750,000	200,000	550,000			
부부욕실	고급 부부욕실 인테리어		116, 117	500,000	100,000	400,000	- 미선택 시, 기본 부부욕실 디자인 시공	
침실1	발코니1 수납장		전 주택형	500,000	100,000	400,000	- 미선택 시, 공간만 제공	
특화 인테리어	침실3	팬트리+드레스룸		84C	500,000	100,000	400,000	- 미선택 시, 기본 복도 팬트리 설치
	주방	주방특화 (주방 팬트리+아일랜드형 가구+주방 상판, 벽(세라믹 타일)+고급 싱크볼+벽 패널+주방 우물천정+중문)		116	5,600,000	600,000	5,000,000	- 미선택시, 기본 'c'자형 주방 설치

※ 추가선택사항 옵션품목 유/무상 적용은 당사의 마케팅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견본주택 오픈 시, 관련 홍보책자 등을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 옵션품목 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개이며, 옵션품목 설치를 원할 경우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추가선택 옵션품목 공급가는 아파트 공급계약금액과 별개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추가선택 옵션품목 공급가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지자체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 옵션품목 계약내용, 납부일정, 제품에 관한 기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별도 확인바랍니다.
- 추가선택 옵션품목과 관련하여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나 동질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 품목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공 상의 문제로 계약 후 사업주체가 공사에 착수하거나 별도품목 상품을 제작업체에 주문 또는 발주한 이후에는 계약의 변경 및 해제 또는 취소가 불가하므로 이점 유념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추가선택 옵션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 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옵션품목의 계약조건(계약금 및 잔금의 납부금액 또는 납부일정, 계약체결 일정 등)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옵션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과는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계약사항이며, 아파트 공급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옵션계약도 자동으로 해제 또는 취소됩니다.

※ 비확장 시 확장부위에 시공되는 추가품목임에 따라 구조상의 이유로 선택이 불가능한점을 알려드립니다.

■ 시스템에어컨 및 추가상업선 납부계좌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 선택품목(옵션) 납부계좌 (계약금, 잔금)	광주은행	1107-021-277164	디아이산업(주)(공동명의예금,외 2업체, 디아이주택개발(주), 디아이하우징(주))

▣ 마이너스 옵션

■ 공통

- 「주택법」제54조제1항제2호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로 시공됩니다.
- 공동주택의 단위세대 내부 마감재중 일부를 선정하여 제시한 마이너스옵션 품목에 대하여 계약자가 세대별 일괄신청시에 해당시설 및 비용을 제외한 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아래 제시된 마감재품목과 금액으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국토교통부의 「동별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시 입주자 선정절차」중 당첨자선정 발표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체결 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선택 품목을 선택하여 계약체결 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적용품목 및 범위

품 목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기본제공품목
1) 바닥재	<마루(걸레받이 포함)> 거실, 주방, 식당, 복도 <타일, 석재> 현관, <타일> 발코니, 대피공간, 실외기실 바닥	각실 바닥 미장 마감, 각실 바닥 난방(거실, 주방, 복도, 침실), 발코니바닥 방수, 발코니바닥 배수슬리브
2) 벽	벽지, 벽 도장 (발코니, 대피공간, 실외기실), 거실아트월, 주방벽 엔지니어드스톤 인테리어 마감 콘센트, 스위치, 조명	단열+석고보드 또는 미장 또는 콘크리트면처리 콘센트 및 스위치의 배관배선
3) 천장	천장지, 천장 도장 (발코니, 대피공간, 실외기실), 물딩, 우물천정 인테리어 마감	천장(천장틀, 석고보드), 커텐박스
4) 일반가구	신발장, 붙박이장, 기타수납장	-
5) 주방	주방가구: 상,하부장(상판 및 액세서리 포함), 주방TV, 주방벽 엔지니어드스톤, 주방수전, 싱크볼, 후드, 가스쿡탑 등 가전제품, 콘센트, 스위치	설비배관, 전기.통신 배관/배선 (주방TV폰 등의 전기입선), 주방 배기덕트
6) 욕실	타일(바닥, 벽), 천정재, 석재, 재료분리대, 욕조하부틀, 코킹, 욕실환풍기, 콘센트, 스위치 욕실장, 샤워부스, 욕실폰, 욕조, 양변기, 세면기, 수전류, 액세서리류	방수(바닥, 벽체), 설비배관(급수,급탕 등 매립배관), 욕실 배기덕트, 바닥배수 슬리브, 전기.통신배관 배선
7) 창호	창호(각 침실 및 욕실 문틀, 목문짝, 목문손잡이 및 경첩 등 하드웨어 일체, 문선)	목창호 가틀, 문틀사춤, 플라스틱 창호내창, 현관 방화문, 주방발코니 도어, 대피공간도어, 실외기실 도어
8) 조명기구	부착형 조명기구 일체	배관, 배선
9) 기타	세탁실 및 발코니수전	월패드, 도어폰, 각실 온도조절기, 에어컨 냉매배관(거실, 안방)

■ 마이너스옵션 금액

(단위: 원, VAT포함)

구분 (주거전용면적)	84B	84C	116	117
기본선택 (마이너스 옵션금액)	30,765,000	30,985,000	38,550,000	38,868,000

■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 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입니다.
- 단, 마이너스 옵션의 선택과 불선택 중 택일 할 수 있을 뿐이며,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합니다.
- 상기 마이너스옵션 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세대별 일괄로 선택해야 합니다.
-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선택 시 유상옵션 선택 및 발코니 확장 선택 계약 불가합니다.
- 상기 마이너스옵션은 자재수급 사정·품질관리·시공관리·공사일정등 기타 사업주체의 사유로 품목 및 범위·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계약 이후에는 마이너스옵션을 추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각 세대별 공사는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옵션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 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3조에 따라 입주지정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 완료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게 합니다.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 후 공사 착수하시길 바라며, 미확인 시 발생한 하자에 대한 책임은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공사시 기 시공된 소방, 통신,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등 기타 기 시공시설물 훼손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제52조, 「건축법 시행령」제61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품목의 시공에 따라 발생하는 하자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시행자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 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건본주택 위치와 다를 수 있으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 옵션 미선택시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마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닥재의 경우 내부 분합문(PVC내부창호)이 당초 계획된 자재인 마루판을 기준으로 설치되어 타자재(대리석 등)의 시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에 따른 계약조건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견본주택에서 확인바랍니다.
- ※ 마이너스 옵션 계약을 체결한 세대의 개별입주 시 마이너스 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분진 등이 발생 될 수 있으며, 이에 타 입주자에게 불편사항 발생 및 민원으로 생긴 법적인 분쟁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 상기 마이너스 옵션 금액에는 취득세 등이 미포함 됩니다.
- ※ 마이너스 옵션 계약세대는 계약시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시공, 설치 관련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분양가는 공급금액 총액에서 마이너스옵션 산출금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VIII 기타사항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 분양보증내용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보증서 번호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239,505,070,000	01212021-101-0005100

■ 분양보증 주요 내용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보증사고(보증약관 제4조)

-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 분양자(매도인)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한 것으로 합니다.
-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 당사가 본 아파트 “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합니다.
- ※ 상세내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문의 바랍니다. (☎ 1566-9009)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사업주체			시공사
상호	디아이산업 주식회사	디아이하우징 주식회사	디아이주택개발 주식회사	대방산업개발 주식회사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72, 211호(백석동,아이비프라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72, 212호(백석동,아이비프라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72, 213호(백석동,아이비프라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48, 11층
법인등록번호	285011-0326989	285011-0327010	285011-0326997	115911-0069601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건축	전기	소방	통신
회사명	(주)해밀씨엠	(주)한국전설엔지니어링	유한회사 이에프	유한회사 이에프
감리금액	2,817,081,300	872,391,000	239,360,000	105,600,000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음)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 본 주택은「주택법」제57조 및「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아파트 단지 분양총액의 범위내에서 각 항목별 총액만을 공개하고,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 사후 검증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 아래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추후라도 이는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단위 : 원)

대항목		세분류		금 액		대항목		세분류		금 액		대항목		세분류		금 액			
택 지 비 (4)	택지공급가격		32,230,087,000		건 축 비 (58)	공 사 비 (51)	건 축 (23)	철근콘크리트공사	44,870,281,000		건 축 비 (58)	공 사 비 (51)	기 계 설 비 (9)	오수·배수설비공사	1,540,054,000				
	기간이자		771,090,000					용접공사	-					위생기구설비공사	1,477,250,000				
	필요적 경비		1,750,841,000					조적공사	1,267,920,000					난방설비공사	1,995,000,000				
	그 밖의 비용		18,470,131,000					미장공사	2,481,793,000					가스설비공사	332,500,000				
건 축 비 (58)	공 사 비 (51)	토 목 (13)	토공사	4,226,339,000				단열공사	2,362,960,000					자동제어설비공사	142,500,000				
			흙막이공사	-				방수·방습공사	1,292,192,000					특수설비공사	2,429,151,000				
			비탈면보호공사	-				목공사	3,810,452,000					공조설비공사	-				
			옹벽공사	276,507,000				가구공사	5,635,120,000					전기설비공사	7,224,280,000				
			석축공사	57,495,000				금속공사	4,117,638,000					정보통신공사	3,612,141,000				
			우·오수공사	1,699,152,000				지붕 및 홀통공사	893,143,000					소방설비공사	5,315,955,000				
			공동구공사	-				창호공사	4,934,576,000				승강기공사	1,932,300,000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				유리공사	1,207,348,000				일반관리비	5,944,346,000					
			도로포장공사	1,132,768,000				타일공사	3,326,109,000				이윤	18,420,933,000					
			교통안전시설물공사	242,440,000				돌공사	3,086,096,000				간 접 비 (6)	설계비	1,859,800,000				
			정화조시설공사	-				도장공사	1,170,364,000					감리비	4,034,432,000				
			조경공사	4,207,109,000				도배공사	1,523,465,000					일반분양시설경비	27,540,169,000				
			부대시설공사	318,623,000				수장공사	2,082,710,000					분담금 및 부담금	4,032,315,000				
		공통가설공사	5,037,256,000					주방용구공사	458,463,000					보상비	-				
		건 축 (23)		가시설물공사				323,056,000		그 밖의 건축공사			2,504,396,000		기타사업비성경비	59,624,686,000			
				지정 및 기초공사				1,018,381,000		기 계 설 비 (9)			급수설비공사	1,074,037,000		그 밖의 비용		33,668,100,000	
				철골공사				-					급탕설비공사	1,163,750,000		합 계		342,150,000,000	

■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 산출내역

- 아래의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는 상한금액 신청을 위한 기준금액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주택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개하며, 상한금액 이하로 책정된 분양가격 공시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항 목		심사신청금액	심사결과금액	차액	조정사유	
택지비 가산항목	법정 택지이자		771,090,247	771,090,247	-	
	제세공과금		1,750,841,129	1,750,841,129	-	
	말뚝박기 공사비		7,231,785,049	6,183,176,216	-1,048,608,833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암석지반 공사비		8,958,812,844	7,659,784,981	-1,299,027,863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흙막이 및 차수벽공사비		5,411,894,641	4,627,169,918	-784,724,723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소 계(택지비 가산항목)		24,124,423,910	20,992,062,491	-3,132,361,419	
건축비 가산항목	법정초과 복리시설 건축비		2,415,702,384	2,415,702,384	-	
	인텔리전트 설비 공사비	홈네트워크	8,582,983,000	7,338,450,465	-1,244,532,535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초고속통신특등급	2,721,607,000	2,360,994,072	-360,612,928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에어컨냉매배관	2,026,696,000	1,758,158,780	-268,537,220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기계환기설비	5,271,405,000	4,507,051,275	-764,353,725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공동주택성능등급		7,807,976,730	7,807,976,730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2,775,980,482	2,775,980,482	-	
	지하주차장 층고 증가 공사비		917,376,000	804,997,440	-112,378,560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법령 개정 에 따른 가산비	건강친화형주택	3,212,241,000	2,786,619,067	-425,621,933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전기자동차충전기	159,742,000	-	-159,742,000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건축 특화		3,224,241,100	-	-3,224,241,100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분양보증수수료		1,143,856,573	1,112,962,402	-30,894,171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소 계(건축비 가산항목)		40,259,807,269	33,668,893,097	-6,590,914,172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의 적용)

1. 의무사항 적용유무

구 분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건축부문 설계기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7조제3항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 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때 외기에 간접 면하는 부위의 단열재 설치는 비난방공간과 면하는 난방공간의 외벽을 단열 조치하여야 한다.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 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방습층 설치(다목)	적 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기계부문 설계기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7조제3항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 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을 따라야 한다.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 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을 따라야 한다.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 용	전동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 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 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 2, 별표1에 따른 절수형설비로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7조제3항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 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 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조명설치(다목)	적 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 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 용	부속동 (근린생활시설, 관리실, 경로당, 보육시설) 화장실내 자동점멸스위치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바목)	적 용	각 실별 온도 조절장치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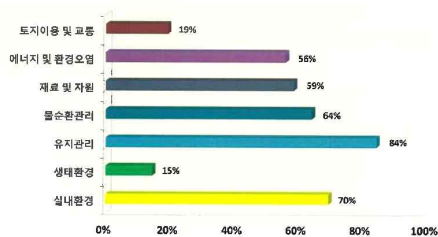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연속율 개요]		[연속율 정보]	
건조물명	포항 현대시티 A1 불지 중동주대	연속번호	G-SEED-P-2021-0964-7
지주 주소	미리산신입하	연속기관	한국상상문화재단
중개(예정)일	2024년 10월 23일	유지기간	2021.9.17. ~ 사용종결일
주 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칠채읍 대천리, 이면리 일원 및 A1B		
종 수	지하 3층, 지상 27층 / 874세대		
면 적	70,382.3304㎡		
건축물의 주용 용도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시설)주용		
설 계 자	에이치비엔지(주)이영헌 건축사사무소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일반 등급)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분야별평가]



2021년 9월 17일



※ 여비임금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증증명 확인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 7. 27.>

1. 공동주택명: 포항 펜타시티 A1 블럭 공동주택
2. 신 청 자: 디아이산업㈜
3. 대 지 위 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이인리 일원 내 A1BL
4. 성 능 등 급

가. 소용 관련 문항		다. 환경 관련 문항	
성능항목	성능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강타형의 자전성능	★★★★	20. 연계형 녹지축 조성	★★★★
2. 통행유치형 자전성능	★★★★	21. 자연친화 녹지축	★★★★
3. 세단 및 경계책의 자전성능	★★★★	22. 생태단절형	★★★★
4. 교통수단(도로, 철도)에 대한 심사 + 소용도	★★★★	23. 비모도 조성	★★★★
5. 학생실용기차 소용	★★★★	24. 실내용차 오일필름 지방화 계층의 적용	★★★★
		25. 전기 완전자용 확보	★★★★
		26. 단차세대 환기장성 확보	★★★★
		27. 차주부도 조경성치 설치 수준	★★★★
나. 구조 관련 문항		라. 생활환경 관련 문항	
성능항목	성능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내구성	★★	1. 단차제 + 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2. 가변성	★★	2. 다중도로에 급행성	★★★★
3. 수직응답성 적용부분	★★	3. 자연기차화장 및 자차기도로 확충성	★★★★
4. 수직응답성 적용부분	★★	4. 생활환경시설의 접근성	★★★★
		5. 생활환경의 환경관리 계획	★★★★
		6. 환경, 유지관리 부서 및 매뉴얼 제정	★★★★
		7. 사용자 제정 매뉴얼	★★★★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9. 단차제도의 사적적 의사제거	★★★★
		10. 공동주택의 사적적 의사제거	★★★★
		11. 제1차 센터 성역 및 시설관리 조장수준	★★★★
		12. 커뮤니티 조성 사업	★★★★
		13. 단차제도의 통합시스템	★★★★
		14. 생활환경 콘텐츠	★★★★
다. 환경 관련 문항		마. 화재 + 소방 관련 문항	
성능항목	성능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기존 단차제 생태학적 가치	★★★★	1. 화재 및 구조비행	★★★★
2. 조경한 지형개량지	★★★★	2. 화재 및 구조비행	★★★★
3. 도로상 절점도형 개량	★★★★	3. 화재 및 구조비행	★★★★
4. 도로상 2차원식 도색의 타당성	★★★★	4. 화재 및 구조비행	★★★★
5. 화재 시 성능	★★★★	5. 화재 및 구조비행	★★★★
6. 내사구 내사구 관리 및 관리의 질	★★★★	6. 화재 및 구조비행	★★★★
7. 신, 사생제제지 이용	★★★★	7. 화재 및 구조비행	★★★★
8. 지리소 내사구 기술의 적용	★★★★	8. 화재 및 구조비행	★★★★
9. 오존층 보호를 위한 태양광발전의 사용 금지	★★★★	9. 화재 및 구조비행	★★★★
10. 환경성능 지표 제표(EPD)의 사용	★★★★	10. 화재 및 구조비행	★★★★
11. 지리소 지리의 사용	★★★★	11. 화재 및 구조비행	★★★★
12. 지리소 환경 지리제지	★★★★	12. 화재 및 구조비행	★★★★
13. 지리소 지리제지 지리제지	★★★★	13. 화재 및 구조비행	★★★★
14. 지리소 지리제지 지리제지	★★★★	14. 화재 및 구조비행	★★★★
15. 지리소 지리제지 지리제지	★★★★	15. 화재 및 구조비행	★★★★
16. 지리소 지리제지 지리제지	★★★★	16. 화재 및 구조비행	★★★★
17. 지리소 지리제지 지리제지	★★★★	17. 화재 및 구조비행	★★★★
18. 지리소 지리제지 지리제지	★★★★	18. 화재 및 구조비행	★★★★
19. 지리소 지리제지 지리제지	★★★★	19. 화재 및 구조비행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1년 09월 17일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장

210mm×297mm[백삼지 120g/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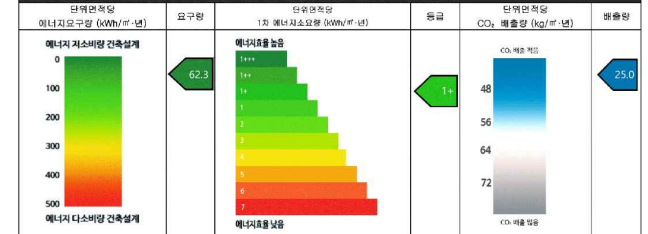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7.1.20>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건축물 개요		인용 개요	
건축종류	: 포항 컨타이너 A1 플렉스 공동주택 신축공사	인 용 증 번 호	: 21-주-에-1+0328
건축연도	: 2024.01.023	평 가 자	: 정병권
주 소	: 경북 포항시 흥해읍 태연리, 이인리 앞길 내 A1BL	인 용 기 관	: 한국부동산인
층 수	: 지하3층 / 지상27층	용 역 기 관	: 한국에너지공단
면적	: 170382.3304(m ²)	유 효 기 간	: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완료일
건축물의 주된 용도	: 공동주택		
설 계 자	: (주)에이치피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인용 등급	
		인 용 등 급	: 1+등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결과



에너지 용도별 평가결과

구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요량 (kWh/m ² ·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m ² ·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kWh/m ² ·년)	단위면적당 CO ₂ 배출량 (kg/m ² ·년)
냉방	0.0	0.0	0.0	0.0
난방	22.7	56.2	43.6	11.7
급탕	30.7	35.9	26.4	7.3
조명	8.9	8.9	24.4	4.2
한기		3.8	10.3	1.8
합계	62.3	104.8	104.7	25.0

■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건축물이 냉방, 난방, 급탕, 조명 부문에서 요구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건축물에 설치된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드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	에너지소비량에 연료의 채취, 가공, 운송, 변환, 공급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

■ 단위면적당 CO ₂ 배출량	에너지 소요량에서 산출한 단위면적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

※ 이 건물은 냉방설비가() 설치된 [V]설치되지않은)건축물입니다

한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와 학자, 그리고 일반인들로부터 다양한 주제와 분야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제공하고 있다.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은 온도 등에 따른 보정계수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 단위면적당 시멘트소비량은 응고 응결 막상 조성계수를 반영한 값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1+등급)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을 받았습니다.

한국부동산원장

2021년 09월 15일



구분

내진능력

U/P

MMI 진도등급 VII-0.239g

■ 홈네트워크 관련 시스템 설치 항목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예비인증서			구분	등급 기준	등급		비고
					설치항목(1)	설치항목(2)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예비인증서 인증번호 제 2021-505-030 호			항목	1	세대단자함과 홈네트워크 월패드간 Cat5e 4페어 이상	침입감지기	
이 건물은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업무처리 지침에 의해 다음과 같은 등급으로 평가되었음을 인증합니다. ※ 이 인증서는 2021년 05월 인증기준으로 평가한 결과입니다. ※ 이 인증서를 각종 광고 및 건물건물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예비인증을 받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려야합니다. 신청인 이름 포항1 디아이산업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48, 대방빌딩 7층 706호 (마곡동) 건축물 이름 포항랜타시티 A1BL 대방 엘리움 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A1블록 인증내용 구분 ☒ 아파트 ☐ 업무시설 ☐ 오피스텔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기숙사 · 도시형생활주택 초고속정보통신건물 ☒ 특등급 ☐ 1등급 ☐ 2등급 홈네트워크건물 ☐ AAA(홈IoT) ☒ AA ☐ A <td>2</td> <td>세대단자함과 홈네트워크 월패드간 16C 이상</td> <td>차량통제기</td> <td></td>				2	세대단자함과 홈네트워크 월패드간 16C 이상	차량통제기	
				3	집중구내통신실 면적	전자경비시스템	
				4	통신배관실(TPS)	무인택배시스템	
				5	단지서버실	욕실폰	
				6	폐쇄회로TV장비	일괄소등제어	
				7	가스밸브제어기	디지털도어락	
				8	조명제어기	엘리베이터호출연동제어	
				9	난방제어기	현관도어카메라	
				10	현관방범감지기	대기전력차단장치	
				11	주동현관통제기		
				12	원격검침전송장치		

·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공동주택의 명칭은 “포항펜타시티Ⅰ 대방 엘리움 (A1BL)”로 잠정 결정하였으나 추후 변경될 수 있고, 분양 시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도 또한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변경 시 이를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 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하고, 제반비용은 계약자 부담입니다.
- 세대 당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경우에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단,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인한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습니다.) 단, 본 단지의 대지는 주거와 비주거시설이 공동으로 사용하며,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에 대한 대지분할 및 대지지분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그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그로 인한 입주시연보상금 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정보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
- 개별인테리어 공사 등은 입주시정기간 개시일 이후, 계약자가 중도금대출 상환 또는 중도금대출 대환처리 및 잔금(발코니확장대금, 유상오피스대금 포함) 및 대납이자 완납 후 가능합니다.
- 분양계약자는 입주시까지 거주지, 연락처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내용(주민등록등본 포함)을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로 필히 서면 제출하시기 바라며, 미제출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계약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은 사업주체가 설치해주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합니다.
- 1주택 처분조건으로 계약한 계약자는 입주시정기간 내 처분완료 증빙을 제출하여야하고, 처분 내역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주증발급 및 입주가 불가능합니다.

■ 홍보물

- 각종 광고 및 홈페이지 VR, 홍보물(카탈로그, 전단, 안내문 등) 등 홍보과정에서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은 추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으며, 홍보물 제작과정에서 오기, 오타자로 인하여 잘못 기재 될 수 있으니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배포된 홍보물 등은 사전 홍보 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견본주택을 확인하시어 계약 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본 카다로그, 홍보물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동, 부속동 및 시설물의 위치, 규모, 외부색채 및 마감재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의 결과 및 당사 디자인 매뉴얼 변경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이미지컷 및 전시모형은 전 세대 발코니확장을 감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본 카다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과 견본주택 내 전시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 연출한 것으로 식재 및 색상, 시설물 등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 견본주택에 적용된 마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급 또는 동질 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어려운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 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그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그로 인한 입주시연보상금 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엘리베이터의 용량·속도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PL창호(프레임, 유리등)는 견본주택 설치를 위해 임의로 지정된 제조사에 의해 생산된 제품으로 본 공사 시 제조사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프레임 및 손잡이 등의 하드웨어는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PL창호 색상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단지 주변현황, 공사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마이너스옵션 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
- 견본주택은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으며, 기본형세대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시공사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온도조절기, 콘센트 및 조명, 바닥배수구, 위생기구(수전, 도기류등), 가스배관, 욕실환풍기 등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실시공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사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될 예정입니다.
- 일부 세대 선택형 평면타입을 적용할 경우 전기 배선기구 및 위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학교 배정

- 당해 지구 내 학생배정계획은 향후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학교 신설 시기 등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과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포항교육지원청 협의에 따라 지구 내 초등학교 신설 전까지 용흥초등학교를 통학구역으로 하고 새로운 통학대책 수립 시까지 안전한 통학을 위하여 사업주체 부담으로 등·하교시간에 통학차량을 운영할 계획임.

■ IoT 서비스

- 대방산업개발과 KT의 IoT서비스는 3년간 무상으로 제공되고, 3년 후 서비스신청 입주민에 한하여 월과금 예정입니다.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및 음성인식 스피커를 통해 세대내 설치된 조명, 난방, 가스밸브 제어 및 무인택배 등의 상태조화가 가능하며, 공기청정기 등 IoT 호환이 되는 가전기기까지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갖췄습니다.
(기본으로 제공되는 세대내 홈네트워크 연동기기(조명, 난방제어등)와 스마트 가전제품(공기청정기, 가습기등)은 소비자가 별도로 구매해야 하며, 반드시 KT의 IoT와 호환되는 모델이어야 합니다.)
- IoT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입주민이 반드시 세대내 유선인터넷을 설치하여야 하고 (통신사 무관), 아파트 단지 네트워크망이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제어방식에 따라 일부 기기는 별도의 서비스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서비스 이용조건은 사용자와 KT의 계약내용에 준하며, 서비스 내용에 따라 추후 변경 및 종료될 수 있습니다.)
- IoT서비스 관련하여 추후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고, KT의 사업정책에 따라 서비스 종료일 60일 전 예고 후 종료될 수 있으며, 세부 이용조건은 (주)KT의 계약 내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IoT기능은 실제 입주시 미구현 또는 성능 개선 등 서비스 항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 아파트 입주자의 하자보수 관련 일체의 입주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적용됩니다.
-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추후 설계 변경된 부분을 하자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의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명칭, 외부색채 및 마감재와 외부상세계획 등은 인허가, 경관/색채심의 및 법규의 변경, 디자인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사 단지 외부(주동, 저층부, 문주, 근린생활시설, 커뮤니티 시설 등) 마감 계획 기준은 석재와 석재뿔칠 혼용(5:5 비율) 적용하고 있으며, 상기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조정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붕층 및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등, 야간경관용 조명, 위성안테나(102동), 이동통신중계설비(103, 104, 105 ,108동), 피뢰침, 급배기 환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받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시설물 위치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엘리베이터와 인접된 세대에는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옥탑 및 지상 일부 구간에는 TV 공청 안테나(102동)와 무선통신 안테나 및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안테나/중계설비 (103, 104, 105 ,108동, EPS/TPS실, 각종 화단 또는 공터, PIT, 환풍실 등)가 설치될 예정이며 전파상태에 따라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고 이는 소방법 및 방송통신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한 것이므로 추후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위치 변경 등의 이의를 일체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각동 표기수는 추후 사업승인 변경으로 인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ex) 201,202,203,204,205동 -> 101,102,103,104,105동)
- 약동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 단지는 「건축법」, 「주택법」 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였으며, 단지 내·외 인접한 건물들과 건물 입면의 돌출발코니, 입면 장식, 각종 시설물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 및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가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상이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시행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에는 쓰레기 분리수거장, 재활용품창고,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TOP LIGHT, DRY AREA(채광, 환기, 방습 따위를 위하여 지하에서 지상으로 낸 통풍구)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설치결과에 따라 일부 저층 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시설물의 위치는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진행 및 본 공사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의 외관디자인(입면, 옥탑, 측벽, 물딩, 창틀, 필로티, 공용홀, 동출입구, 캐노피, 지하출입구 등) 및 외부 시설물(문주, DA, TOP LIGHT, 난간, 자전거보관소, 쓰레기분리수거장, 조경패턴 등)의 형태, 마감재 및 색상은 심의 및 법규, 디자인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배치 상 기계/전기실, 발전기실, 급배기구, 오수 및 쓰레기 집하장 인접실에는 냄새, 소음 및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시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사가 안내하는 세대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라며, 청약신청 및 입주 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구와 인접한 저층 세대는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소음 및 불빛에 의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이용시 주동주출입구에서 거리가 먼 곳에 차량이 주차될 수 있어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 및 타사 또는 당사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 예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계약세대가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조합으로 인한 요철 및 입면디자인으로 인한 장식으로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일부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결정에 따르며, 모든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타 지역의 타사 또는 당사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마감재의 사양은 타입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분양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인지하신 후 분양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스프링클러설비로 인해 본 공사시 커튼박스의 폭, 깊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침실발코니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화재 시 피난할 수 있는 하향식 피난사다리차 설계되어 있으며, 또한 견본주택에 표시된 위치 및 크기는 도면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각종 인증과 관련하여 인증서 및 관련도면에 첨부된 자재 및 공법은 실 시공시 현장 여건 및 자재수급 여부에 따라 동급성능 또는 동질 이상 자재 및 공법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따라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측정결과를 주민 입주 7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는 일부세대의 동의를 받아 공사 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저해할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자는 본 주택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집약관리를 위해 동법에서 지정하는 보험회사와 화재보험계약을 계약자의 부담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음으로써 화재 기타 이와 유사한 재해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피해는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사업승인 시 해당관청에 제출한 총사업비 규모는 사업을 진행하기 전 사업주체가 예상하는 총사업비 규모를 예상하는 금액이며, 입주자 모집공고상의 금액은 당사가 사업승인권자로부터 “분양가 심의”를 받은 후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므로 당초 사업비 규모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홍보물에 적용되어 제작·배포된 시행사 및 시공사의 각종 로고 및 BI, CI 등의 이미지 디자인은 사업주체가 신규로 제작하는 경우 또는 사업주체의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사업주체가 시공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 조경 및 조경 시설물은 시공상 경미한 설계변경, 인허가관청의 건축허가조건 및 요청 등에 의해 설계변경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시공상의 변경사항은 계약자의 개별적인 동의를 요하지 않으며, 계약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 조경계획의 경우 사업계획승인부서(구청 및 시청)의 조건 및 당사의 조경특화 계획에 따라 최초의 계획(사업승인 및 카달로그 및 견본주택 모형)과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하여 계약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현장여건에 의하여 동선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주택건설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승인변경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지면적과 용적률, 건폐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전체면적 (기타면적포함)	공동주택면적	근린생활시설면적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	43,557.0000m ²	168,925.5400m ²	1,467.1615m ²	18.08%	249.89%

- 최종측량성과도에 따라 도로 폭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본 건축물 경계부의 높이차에 의하여 램프나 계단, 옹벽, 조경석 쌓기, 플랜터 등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이용자로 하여금 프 라이버시, 소음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모형, CG 상의 조경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추후 실제 시공 시, 조경 및 식재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대지의 레벨 차이 및 건축물계획에 의한 레벨 차이가 있으며, 본 건축물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건축물 내 조경수와 조경 시설의 위치는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본 건축물 옥외공간의 조화, 에어컨 실외기공간 설치 등에 따라 선형이나 포장과 시설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개공지는 공공에 개방되는 시설로서 입주자 임의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으며, 유지 및 관리에 발생하는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며, 또한 외부인의 통행 및 출입이 가능하므로 소음 등에 따른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가산세 포함) 및 제세공과금 등은 계약자 부담으로 하여야 합니다.
- 인지세법에 따라 부동산 분양계약(1,000만원 초과 별도품목 계약 포함)시 계약체결일, 분양권 전매계약 체결 시 명의변경 승인일에 인지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 계약체결 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첨부하여야 하며,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지 않고 계약 당사자 간 인지세를 현금으로 인계하는 것은 납부의무 불이행으로 가산세(최대 30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분양권 전매계약 체결 시 여러 회 전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전매시마다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및 명의변경 승인일에 인지세가 납부됨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별도로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분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 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분양계약서에서 규정한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불법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단지 내부 여건

- 단지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계단 및 엘리베이터는 주변 지형 및 도로 레벨의 특성 고려하여 건축계획 되었으며, 계단 및 엘리베이터 위치 이동, 추가 설치 요청에 따른 민원 불가하며 이용자로 하여금 소음 및 프라이버시가 침해 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설치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쓰레기분리수거대, 자전거보관소 위치 및 설치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주변에 악취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차량정차공간은 비상차량 및 소방차량 정차공간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주거동 옥상은 관련법규에 따른 인허가 및 건축(경관)심의 권고에 따라 본 공사시 그 형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모든 동 들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로 주차대수는 대지형태, 주동배치에 따라 동별 차이가 발생될 수 있으며 주차대수는 전체세대에 대한 지하에 배치된 주차대수의 평균 대수이므로 각동과 인접된 주차장이 주차대수보다 부족하다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지하주차장 출입램프 포함)등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출입구에는 지하주차장 출입 및 지상차량 출입램프가 설치되며, 또한 주차 차단기의 위치는 현장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일반주차, 장애인용 주차, 확장형주차, 경차주차, 전기차 충전면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각 용도별주차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상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출입이 금지되고, 출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사업주체와 시공사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옥상으로 직접 출입할 수 있는 출입문은 보안을 위하여 출입이 통제될 수 있습니다.
- 주 출입구 경비실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지하1층에 설치됨에 따라 각 동별 이용거리는 상이하며, 인접한 동은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에 의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되어질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램프나 계단, 옹벽, 조경석쌓기, 자연사면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용자로 하여금 프라이버시, 소음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조경공간 등은 실 시공 시 대관 인·허가과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세대의 기타공용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리사무소, 경로당, 도서관 및 주민공동시설 일체의 운영 및 유지관리는 입주인이 자체적으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 도서관 및 독서실 및 가구류, 실내운동시설의 운동장비 등은 제공되며, 기타 주민공동시설의 가구 및 가전, 소모 집기 및 비품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의 이동식 가구 및 가전, 소모 집기 및 비품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주민운동공간 및 단지출입구, 지하주차장 출입구, 경비실, 관리사무소, 어린이 놀이터, 보육시설, 산책로 등 주민 공동시설이 위치하는 곳의 저층 일부세대에는 소음 및 진동의 발생에 따른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각 동 출입구에서 쓰레기 집하장까지의 거리는 동별로 상이합니다.
- 단지 내 설치된 놀이터, 운동시설, 경로당은 아파트 법적설치 시설이나 공동사용 여부에 따라 사용검사 완료 후 입주자회의 및 관리조약에 의해 공동 부담하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제기 할 수 없습니다.
- 각 주동은 최상층에 설치된 옥탑구조물에 따라 시야 및 조망에 제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시스템의 설치 위치 및 대수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하층에서 각 동의 출입구가 2개 이상일 경우, 어느 한 쪽 출입구 쪽에 더 근접하여 설치될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지하1층 지하주차장은 층고 2.7M의 입주자 주차공간으로 대형 이삿짐 차량 등과 같은 대형 화물 차량 진입 계획이 고려되어 있지 않으며, 추후 주차장 램프 및 차로의 높이에 따른 차량 진입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진출입구 높이는 2.7M이고 지하1층 주차장 통로 유효높이는 2.7M이나, 일부 통로는 2.3M, 일부 주차면은 2.1M로 시공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현장여건에 따라 단지 내 동선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전기차 충전설비는 경상북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될 예정이며, 이와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영유아보육법」 개정(18.12.24)에 따라 '19. 9. 25부터 「주택법」 제 4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는 주민공동시설 내 의무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세부내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101동, 102동, 103동, 107동, 108동의 각 층 엘리베이터 홀 및 복도에 위치한 창고는 공용면적에 해당하므로 세대에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101동 후면으로 통하는 단지 내 비상차량 통행로 중 일부 구간은 레벨차이로 인하여 급격한 경사가 형성되어 장애인 및 노약자 등 일부 보행자 통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101동에서 103동 후면에는 단지 외부 도로 및 기반시설 레벨과의 단차로 인한 건축 옹벽이 최대 7.5미터 높이 내로 형성되어 있으며 옹벽과 인접한 단지 내 통행로 보행자 보행자의 시야 및 개방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서측으로 지구 내 용수공급을 위한 배수지가 계획되어 있고 배수지 내 물탱크가 지상으로 노출되어 인접한 세대로부터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서측 배수지 시설공사는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조성사업 시행사 및 관할 시청에서 추진중인 사항이므로 시설과 관련된 세부계획은 관할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부에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되며,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 여건
 - 당해 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개발(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조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와 관련한 각종평가(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내용 중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는 당해 지구가 사업진행지구이며 현재 공사 중으로서 입주 후 주변단지 등의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비산먼지, 공사차량 통행, 교통장애 및 생활여건시설 미비 등에 따른 불편 내지 생활이익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며, 당해 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하여 설치되는 도로, 녹지, 종교용지, 단독주택용지, 주차장용지, 근린생활용지, 학교용지, 유통시설용지 등 개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 비산먼지 기타 외부인 통행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책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당해 지구 내 및 인근의 신설·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지구 내 기타용지에서 발생될 수 있는 환경(간섭, 소음)오염 및 유해시설 등은 공동주택 주거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현장 등을 확인한 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사업부지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개조 등의 건축행위,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현재와 다르게 단지내 아파트 동별, 향별, 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 일조, 조망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를 받을 수

-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이므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책임은 없습니다.
- 도로, 하수, 가스, 공원 등 사업부지 외의 개발계획 및 기반시설은 국가기관, 지자체, 해당공사에서 설치하므로 사업추진 중 일부변경, 지연될 수 있으며, 학교 및 학군의 경우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학생배정계획은 향후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등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민 초등학생, 중학생은 인근 기존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배치할 계획으로 학생배치 여건 등에 따라 배치 대상교 등 배치계획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사업 추진 현황 변동(취소, 해제 등), 세대수 변경, 사업추진의 장기화 등 제반 여건의 변화와 학급당 학생수 하향 조정 정책 추진에 따라 학생배치계획 등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각종 교육시설은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입주시기 조정 및 학교설립시기 조정 등에 따라 설립계획이 일부 보류·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음.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조건에 따라 향후 제반 사안이 변동 될 경우 입주예정시기가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시기 변경 사유 발생 시 사전 통지할 예정입니다.
 - CG 및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서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당해 지구내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위치,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주변개발 등 주위 환경에 대해서 청약 및 계약 전에 견본주택 및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계약자의 미확인 등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광고·홍보 유인물(사이버 견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 시설(학교, 도로, 공공용지 등) 등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추진 예정중인 사항을 발췌·인용한 것으로서 국가 또는 해당기관의 정책 등 사정에 따라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이 향후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별도로 확인하여야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용검사 때와 달리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 될 수 있으며, 이에 인한 사업주체, 시공사와 행정청에 이의제기 및 보상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사업승인도서, 카달로그, 단지모형 상의 외부도로, 진입도로는 사업승인시의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따라 반영되었고, 추후 교통영향평가 변경이 있을 경우 단지 내,외부도로, 진입 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 출입구 위치 및 형태는 상이해질 수 있습니다.
 - 본 지구내 및 인근의 신설, 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되어질 수 있습니다.
 - 최초 분양 시와 달리 준공 후 도로여건이 변하여 교통소음이 심화될 경우에는 행정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주변 도로여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유해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 시 견본주택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부출입구 진입도로는 지구 내 도로레벨 등 외부 여건으로 인하여 급격한 경사가 형성되어 장애인 및 노약자 등 일부 보행자의 보행 출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보행자의 원활한 출입을 위하여 108동 우측 근린생활시설 부근에 보행자용 출입구가 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아래 사항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디자인

- 분양시 홍보물에 사용된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품들은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본 공사시 동급 또는 동질 이상의 제품으로 시공됩니다.
-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걸레받이, 벽지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면적별 분양되는 단위세대의 마감재의 색상 및 제품은 차이가 있으므로 필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선홍통은 발코니 또는 PD내에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전기(스위치, 콘센트, 월패드 등) 설비마감재 설치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모든 배선기구, 조명기구의 위치 및 수량은 현장 여건 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홍보물에 표현된 옥상 구조물의 크기, 위치, 모양, 색상 등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층별, 라인별로 외부마감재료 및 외부창호의 사양, 색상 및 디테일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석재, 마루 등 천연소재 자재의 경우 천연재료의 특성상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는 실제 또는 제품간 서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바닥에 사용되는 마루자재는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와는 실제 또는 제품간 서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합판마루는 천연소재 자재 특성 상 L/M/D의 마감재색상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이는 자재의 하자 및 오시공이 아니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 시 가구는 자체제작으로 시공여건 및 미관개선,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용자의 편의 및 시공 상의 이유로 가구 사이즈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원자재 수급에 따라 색상 및 패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구 하드웨어의 사양은 동급 또는 동질 이상의 사양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가구 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고정형 가구 상하부, 측면 및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와 접하는 상부, 측면,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을 기본으로 하며, 수전이 설치되지 않은 발코니에도 배수설비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이는 시공상 하자가 아니므로 하자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공사시 침실문 후면 벽체에 세대분전반, 통신단자함이 설치됩니다. (현장 여건상 위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공사시 천장틀의 종류 및 규격은 천장구성 및 마감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모형, 인쇄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 주방가구 및 고정형 가구 하부는 난방코일의 간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21. 세대입구는 전시용 프레임이 설치되었으며 본 공사시 문틀 및 현관바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2. 세대 내부실 시공 시 「건축법 시행규칙」[별표5] 건축허용요차(제20조 관련)내의 시공 오차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견본주택과 다소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이는 시공상 하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5. 발코니 확장 시 세대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확장부위에는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나 결로현상은 입주자의 관리상의 문제이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시공 상의 문제가 아니므로 결로 및 이로 인한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6. 실외기 실 캐러리(루버) 창 프레임 및 캐러리 등은 금속성 또는 PVC계 재질로서 외기에 직접 면하므로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하자가 아니며 입주자가 관리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27. 옵션선택시 실외기는 발코니 내 실외기실에 설치되며 단위세대 타입별로 실외기 실 위치 및 크기가 상이하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8. 공용 홀의 창호는 FIX창으로 개폐가 불가합니다.(일부층은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됩니다.)
29. 계약자는 입주 후 세대 내 폴리싱타일 표면의 물기를 즉시 제거해야 하며, 물기로 인하여 미끄러울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30. 공용부위의 타일 표면에 물기 발생시 미끄러울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31. 입주 후 세대 내 환기가 부족할 경우 내/외부의 온도차이 및 습기로 인하여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는 결로에 의한 곰팡이 발생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키셔야 하며 특히 입주 후 첫해 겨울은 환기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욕실 샤워기 및 다량의 온수 사용 시 욕실 환기를 하셔야 하며, 욕실 환기 미비, 거실, 주방 등에 과도한 가습기 사용이나 음식물 조리 및 다량의 화분(실내 또는 발코니)은 결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므로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시기 바라며 환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2. 단열공사 외 환기불량, 사용상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로에 대해서 사업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33. 발코니 사시는 층수, 향에 의한 바람의 영향차이로 인해 유리의 강도 및 두께가 달라질 수 있으며, 바람 등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견본주택에 제시된 형태와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34. 단위세대에 시공되는 자연석재(화강석, 대리석 등)는 재료의 특성상 무늬가 일정치 않으며, 일부 표면이 보수된 자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욕실 내부에 사용되는 석재는 비누물(세제류 포함) 등에 취약하여 백화 등의 화학적 현상이 발생되므로, 입주자가 사용 후 즉시 청소를 하여 관리해야 하며, 입주자의 관리소홀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5. 견본주택에 시공된 마감자재는 자재특성상 본 시공 시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 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합니다.
36.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와 위치는 견본주택 기준으로 시공되며 경우에 따라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7. 견본주택은 기준층 세대로 꾸며져 있으며 층별, 라인별로 천장고 및 출입구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해당 평면도를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38. 외부 입면계획에 따라 장식물 등이 세대 외벽 및 전면 발코니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39. 공사 진행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절한 절차에 따라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고, 추후 본 주택의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의 판단 기준은 사용승인도면에 따르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40. 창호 및 문의 열림 방향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와 위치, 크기, 개폐방식 등은 시공여건 및 미관개선,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41.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42. 지하주차장에서 각동으로 출입 시 지하연결통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43. 지하주차장에서 주차 후 엘리베이터 홀까지 동선이 다소 길어 이용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48.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사시는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사양이 실시공시 인허가 협의완료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49. 확장되지 아니하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습니다.
50.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51. 외부 시스템 창호에는 구조상 국기봉 설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2. 견본주택 내에 시공된 단위세대 조명기구 공사 중 본 공사 시 조도개선 및 자재생산업체 부도, 생산중단 시 동등(자재단가)이상의 제품으로 변경합니다.
53. 동 하부에 필로티가 설치될 계획(일부 또는 전체)이며 시공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54.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55. 본 공사 시공 시 자재특성, 품질, 미관 향상, 마감시공 방식 차이에 따라 견본주택 시공방식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56. 세대 내 일부 발코니에는 결로현상방지를 위한 단열재가 추가 설치되어 내부 실치수가 다소 줄어 들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57. 세대 내 욕실에는 바닥난방이 설치되며(욕조 및 샤워부스 공간 제외), 샤워부스 설치타입의 경우 욕실과 거실 또는 침실과의 단차가 미미하여 욕실 내 신발 등이 출입문과 간섭될 수 있으며, 샤워부스 측으로 배수계획이 되어있어 사용상에 다소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8. 욕실 천정에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구가 천장에 설치되며, 환기를 위한 환기팬이 설치됩니다. 또한 견본주택에 표시된 위치 및 크기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59. 대피공간 없이 침실1 전면 발코니에 하향식 피난구(관계 법령에 따라 화재 등 긴급피난시 상부세대에서 하부세대로 하향식 피난구가 개방되고, 사다리가 내려와서 아래 세대로 피난이 되는 구조)가 설치되며, 피난구의 설치위치는 층별로 상이하며 최하층 세대, 필로티 상부 세대에는 하향식 피난사다리 설치 제외됩니다.
60. 하향식 피난구는 피난의 용이성을 위해 층별로 위치가 좌우로 교차되어 설치되며, 발코니 바닥 및 천정에 제품 마감면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 하부세대로부터의 피난구 상부 덮개로 인한 소음 및 방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아래층 피난구를 임의로 막을 수 없으므로 계약 전에 피난구 위치 및 크기 등 관련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1. 발코니 스프링클러설비로 인해 본 공사시 커튼박스의 폭, 깊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62. 전열교환 환기장비는 실외기실에 노출되며, 미관이 저해될 수 있고, 작동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3. 난방은 개별난방으로 보일러가 제공되며, 실외기실에 실외기와 함께 설치 되고 가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4. 아파트 외부 창호는 내풍압 구조 검토에 따라 세대별, 층수 별로 창호 사양(창틀, 소프트웨어, 유리등)이 변경 및 축소될 수 있으며,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의 개폐방향, 날개 벽체 및 분할시공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66. 본 공사 시 시공 상의 이유로 바닥레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규격

1. 분양시 홍보물에 표시된 평면도(치수, 구획선), 실내투시도(색상, 구획선), 단지배치도, 면적 및 도면내용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세대내 거실의 아트월 설치, 복도, 침실 등의 벽체마감(마감두께 등)으로 인하여 본 아파트의 인허가 도면보다 안목치수가 줄어 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3. 계약자 선택사항에 따라 세대 내부의 마감재 및 가구에 대한 마감치수(두께, 폭, 넓이)가 설계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제공/전시품목

1. 분양시 홍보물 및 실내투시도에 표시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내·외부창호는 본공사시 제조사, 사양, 색상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생활가구류(침대, 소파, 책상, 의자 등), 생활가전류(냉장고, TV, 밥솥, 전자레인지 등), 침장 및 커튼류, 인테리어 소품류(사진, 액자, 화분 등)는 연출용 전시품입니다.
2.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든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견본주택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및 감지기와 벽체에 설치된 경보기 등은 모델하우스 자체의 소방시설입니다.
4. 모형 및 조감도에 표현된 각 주거동 저층부와 고층부 외벽의 리브형태 및 지붕모양 및 부대복리시설의 형태, 색상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각 주거동 저층부 및 고층부 ,부대복리시설 등에 표현된 장식물의 형태는 실제 시공 시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5. 견본주택 내에 설치되는 품목 중에 기본으로 제공되는 품목과 확장시 제공되는 품목이 구분되어 있으니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6. 공급주택의 실내 마감자재 중 미표기 사항 등 카탈로그에 포함되지 않은 설계내용은 사업계획승인 도면에 따라 시공됩니다.
7. 홍보 카탈로그, 안내문 등에 표시된 택지지구의 각종 주변시설(학교, 도로망 등)은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및 시행/허가관청, 지방자치단체, 국가시책 및 개별 소유주의 이용 용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책임은 없습니다.
8. 주민공동시설에 설치되는 주민운동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체육시설업”(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 경영하는 업[業])으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9. 각종 홍보물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모형제작 및 그래픽 표현의 한계 등의 사유로 실제와 상이 할 수 있으며, 시공시 구조 등의 안정성 및 입주민의 이용효율을 고려하여 변경 될 수 있습니다.
10. 각종 홍보물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상의 구획선, 부지고저차, 시설물의 형상, 외부입면계획 등 일부 경미한 사항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사업계획변경승인 및 신고 등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아니합니다.

■ 환경권

1.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등의 사생활권의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며, 인접동에 의해서 조망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단지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문주, 식재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 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해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 및 장애인용 램프위치에 따라 동 현관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5.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와 단지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및 전소동(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에 의한 사생활권 및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6. 주차계획상 지하주차장 주동주출입구에서 거리가 먼 곳에 주차하여 이용할 수 있을 수 있으며, 각 동별 인접한 주차대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7. 단지 내 도로와 인접한 저층세대는 차량의 헤드라이트 및 보행자에 의해 거주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8.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동의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습니다.
9. 엘리베이터에 면한 세대의 경우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상층 근접 세대의 경우 엘리베이터 기계실의 기계작동에 의한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위치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10. 인접동 및 인접세대의 배치 등에 따라 세대별로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필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휴게공간(데크썬터) 및 어린이놀이터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하거나 생활환경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12. 단지 내 인접한 도로 및 공원으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3. 단지 내 계획된 부대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주민공동시설 등)로 인해 인근 해당 동 및 세대에 소음이 발생하거나 생활환경이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근린생활시설 인접되어 있는 동의 저층세대는 해당 시설의 이용으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시야가 차폐될 수 있습니다.
15. 단지 내·외부 표고차이 및 주변 학교 및 아파트로 인해 일부 세대의 경우 조망 기타 생활환경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16. 지하주차장 내부에 위치한 실외기실, 팬룸실로 인해 인근 해당 동 및 세대에 소음이 발생하거나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7. 각 동의 저층부 세대는 가로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 지하주차장 출입구와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지하주차장 출입구 지붕 설치로 인하여 조망이 차폐될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소음 및 조명에 의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외부환경디자인

1. 단지 내 조경, 주동, 동출입구, 지하출입구, 세대방화문, 내부 공용홀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각 동별, 층별, 세대별로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를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2. 외부 시설물(문주, DA, TOP LIGHT, 난간, 자전거보관소, 쓰레기분리수거장 등) 의 위치, 크기, 수량, 색채, 재질, 디자인은 본 공사시 관계기관의 협의 및 디자인개선 등의 이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3. 분양시 홍보물의 모든 도면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컷으로 착공 및 설계변경 시 또는 실제 시공시 시설물의 배치, 구획, 면적, 모양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단지 모형의 조경 및 식재, 주변 환경, 부지 고저차, 주거동 외관 디자인(외벽의 줄눈, 리브형태, 지붕모양, 측벽, 옥탑장식물, 울딩, 창틀모양 등), 부대복리시설(근생, 어린이집,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등)의 입면 형태 및 마감재료, 색상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5. 단지 보행출입구, 차량 진출입로는 기존 도로의 선형 경사도에 따라 본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토지면적은 확정측량에 따라 면적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주민공동시설은 공간 활용의 개선을 고려해 동일 면적 내에서 실배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공사시 재질, 색채, 가구 및 집기류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8. 아파트 저층부 외벽마감은 특화 디자인 계획에 따라 시공하며 디자인, 마감재, 색채 등 디자인개선 등의 이유로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9. 당사 단지 외부(주동, 저층부, 문주, 근린생활시설, 커뮤니티 시설 등) 마감 계획 기준은 석재와 석재뿔칠 혼용(5:5 비율) 적용하고 있으며, 상기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0. 단지 경계 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1.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12. 지상 자전거 보관소 계획 등은 설계변경 등으로 위치 및 개소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13. 단지 내 조정, 수경시설 및 조경수의 종류, 수량 식재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 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 이상으로 시공됩니다), 관계기관 심의결과, 심의과정 등에 따라 조경시설물에 따른 조경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14. 당사 외부 마감재 사양은 현장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해당 현장 마감재 사양에 대해 당사 기현장과 비교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5. 아파트 외부의 특화디자인(색채디자인 포함)은 주변환경의 변화, 디자인 트렌드 변화, 신소재 개발, 당사 디자인매뉴얼 변경 등을 반영하여 별도 계획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내용 및 모델하우스 모형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1. 분양시 홍보물, 모형, 이미지 등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품집기는 실제 시공시 재질, 색상,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부대복리시설의 구성 및 건축이용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본 공사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부대복리시설의 입면, 재질, 창호디자인은 외부특화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합니다.
5. 어린이집, 경로당, 어린이/유아놀이터, 멀티운동장, 통학차량 정차공간(키즈스테이션),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및 키즈룸, 북카페, 입주민회의실, 골프연습장, 피트니스센터, GX룸, 스터디룸 등의 커뮤니티시설이 설치됩니다.
6.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및 분양안내책자(카탈로그 등)에 표현된 커뮤니티시설(주민운동시설 등) 내부에 표현된 시설물, 냉난방기기, 집기류(기기 및 비품 등)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별도로 제공되지 않으며, 주민부대복리시설에는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및 품목만 당사가 시공하므로 기타 시설, 기기 및 비품은 입주 후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구입하여 설치 및 운영, 유지, 보수, 관리하여야 합니다.(실제 시공될 시스템 등 설치품목은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비교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 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당사에서 "분양관련 서비스지원품목(커뮤니티시설 내부시설물, 냉난방기기, 집기류)"을 별도로 서비스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 이후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거나 또는 관리사무소가 선정되고나서, 동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에 서비스지원품목 일체가 인수인계되며 이에 대한 관리 및 유지, 보수책임은 인수자(동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에게 있으며, 이 "분양관련 서비스지원품목"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별도의 하자보수 등의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8. 사업주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지원품목(커뮤니티시설 내부시설물, 냉난방기기, 집기류)의 입주자 사용은 당 품목이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인계가 완료된 이후에 가능합니다.
9. 주민공동시설은 입주민이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만을 제공하며, 지층의 특성상 전자기기, 목재류 등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습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가급적 설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 2019년 8월 20일부터 분양권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분양권 계약자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부동산 취득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 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또한 외국인 거소 요건 등에 따라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때 공급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홈페이지 주소 : <http://elium-pohang.co.kr>

■ 주택전시관 위치 : 경북 포항시 남구 상도동 721, 722 / 분양문의 1688-9700

- ※ 본 모집공고의 내용은 2019. 12. 6., 2020. 1. 1., 2020. 4. 17., 2020. 9. 29., 2021. 2. 2, 2021. 7. 5., 2021. 9. 27.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반영된 참고자료로서, 지역과 주택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전시관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 법령이 우선함, 본 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 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함)
- ※ 자세한 공사 범위 및 마감재는 주택전시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